

Legal Battle Continues Despite Intransigent Japan and Obstructing U.S.

반성없는 일본과 미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정투쟁

Barry A Fisher

Japan's wartime allies Germany and Austria worked hard to settle Holocaust Claim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new century and millennium, but four years into the new century, Japan and its companies have yet to deal seriously with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for the horrors slave labor, "comfort women" atrocities, and massive devastation and brutal occupation of much of Asia by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In 1999, I and other lawyers involved in the European Holocaust compensation cases, began to file a parallel set of lawsuits against Japanese entities. These cases were filed in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citizens of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They involved claims for the former 'comfort women,' and people pressed into slave labor for Japanese companies. While several cases are pending in the U.S., here is a brief progress report on the two most important cases waiting for decisions:

Hwang Keum Joo v. Japan,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위안부'소송) the 'comfort women' case is pending before the U.S. Supreme Court. Brought on behalf of victims now living in the PRC, ROK, Philippines, and Taiwan, it was filed on September 18, 2000. Joo Ee Ba-the date Japan invaded China in 1931 from the occupied Korean Peninsula. It is the only case filed in the U.S. against the country of Japan rather than Japan companies. A petition to the U.S. Supreme Court to review the appellate court's dismissal was filed on January, 2004.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ggressively supported Japan against the "Comfort Women" in the case claiming the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that a wall should protect countries from being sued.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s to whether it will accept the Hwang case for review is expected by the beginning of July.

Jeong Jaewon v. Taiheiyo (formerly Onoda Cement) (일본기업을 상대로한 징용소송) is the lead case among several slave labor cases still pending in the California State court, including cases on behalf of Chinese living in the PRC and U.S., and Korean cases. Mr. Jeong was held in slave labor at a Onoda company factory in a town now in the DPRK and was held with many persons still living in that area in the DPRK. Jeong case was filed in 1999 so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ayden Law, a California State law that extended the date by which slave labor cases could be filed in court, and we successfully defeated walls of defenses raised by Japanese company and powerfully supported by U.S. government. In January 2003, we had a very important victory the California Court of Appeal ruled that the act was constitutional.

The Japanese company, supported by many of the biggest in Japan industry joined by the U.S. Government, subsequently asked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to review this matter. Before California Supreme Court decides to hear the case or not, during that time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a case dealing with a Holocaust related California state statute in a case called Garamandi. Although it is not a controlling case,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asked the middle appeal court to re-consider Jeong case in light of Garamandi. The Appeal court then revers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uled that the Hayden Act is unconstitutional in late March of this year. On May 9th, we filed a petition to review at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We expect to hear from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by July of this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aggressive in its support of the Japan side in all of the "comfort women" and slave labor cases. To do so it has had to turn on its head the conservative and right principles it advocates regarding the nature of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and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states. President Bush and his political party advocate a small central government and stro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Hayden Act is a procedural law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bringing war-time slave labor claims. Historically, procedural matters have been left with the states.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argues that such a change in a state's law might have too much impact on the power to conduct foreign affairs b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American central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support the Japan side of these cas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lso invented a new history regarding the 1951 San Francisco Treaty between the U.S. and Japan. Focusing on a clause in the treaty which encouraged that Japan should enter into separate negotiations with Korea another na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w determined that this language of encouragement is also a language of absolute exclusivity, that it would be the only remedy for the Koreans, and that the U.S. policy is not to assist in any way or to have anything to do with Korean claims, including allowing its court to be used for any Korean claims.

This interpretation is not based on the language of the treaty and from our standpoint, groundless. In the petition to review, we asked that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carefully look at this issue, the issue not to be trumped by the mere statement of opinion of what the treaty means without any support from the historical record at the time of the treaty enactment. The Bush administration is advocating the conservative principle of a small central government and more power to the states, yet it flexes muscles on foreign affairs and chose to create a big obstacle in the war-time victims' fight to achieve justice.

Although Japan and most Japanese companies have to date been intransigent, these cases have been, as the similar filings on the European side were, a great stimulus to public discussion, promoting a coming together of people that previously would not have happened they have contributed to a new awakening of historic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example, there had never been (at least to the knowledge of those in the West) public meetings where victims of the Japanese occupation could openly discuss what had happened to them. Within a few months of the filing of a lawsuit on behalf of Chinese victims, the government of the PRC approved the holding of conferences devoted to this subject.

The court cases brought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helped stimulate North and South Koreans to stand together as victims of the Japanese. The very refusal of the Japanese side to enter into discussions has increased the momentum for North and South Koreans, Chinese, and others to find common ground and work together.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and full compensation can never be possible, but I am hopeful that the victims will ultimately attain some recognition in the U.S. court system. [end]

* Barry A. Fisher(배리 피셔) 소개

국제인권변호사(Fleishman & Fisher, Los Angeles, California). UN 관련 NGO인 국제인권변호사협회수석부회장. 영국·독일·러시아·스페인·캐나다정부자문, 러시아루마니아·보스니아·몰도바·알바니아헌법초안참여. 미국에서의징용·“위안부” 대일보상소송의변호인단을이끌고있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다. 국적소송인 유대인피해소송(일명 홀로코스트소송)에서 8개국대표들과 함께 베를린과 비엔나에서 있었던 협상팀의 일원이었으며, 최종배상협정의 서명자중의 한명,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은 스위스은행들을 상대로 한 홀로코스트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캘리포니아법정에서 중국인, 한국인을 포함하는 일제강제노역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소송. 워싱턴 DC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중인 “위안부”소송 등이 있음.

Fleishman & Fisher

1875 CenturyPark East #2130, Los Angeles, CA90067

이메일 bfisher557@aol.com

* Barry A. Fisher: Lawyer, musician, historian

attorney at Los Angeles based law firm, Fleishman & Fisher; Senior Vice President of Human Right Advocates International, a U.N. NGO.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 team and was a signatory of the Holocaust settlement with German and Austrian governments;

Is leading plaintiffs' legal team in a number of U.S. court cases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nd sexual slaves of Japanese WWII war crimes

Participated in drafting constitution of Rumania, Bosnia, Moldova, Albania

Provided consultation to British, Germany, Russian, Spanish, Canadian governments

Under New World Order

주제포럼 1 역사교과서와 군국주의

日本右翼歴史教科書検討

- 教授資料·教師用指導書를 中心으로

辛珠柏(韓國教員大)

1. 머리말
2. 侵略을 擁護한 歷史認識-아시아·太平洋戰爭
3. 本心을 감춘 二重의 歷史敍述-苦痛歪曲·抵抗無視
4. 周邊國을 無視하는 未來指向
5. 맷음말

1. 머리말

내년에 다시 扶桑社의『新しい教科書』에 대한 검정결과가 발표된다. ‘리벤지’하겠다고 했으니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제기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 궁금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럼에도 2001년에 비해 자기 주장을 더욱 세련되고 과감하게 교과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충돌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 발표자는『新しい教科書』의 형제편인 明成社의『最新日本史』를 검토함으로서 감히 그 방향과 깊이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오늘 발표문에서 明成社의 교과서를 검토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한국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글이 그다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1년도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파동과『한국근·현대사』의 2003년도 발행을 전후로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교과서 가운데는 扶桑社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2001년이 지나면서 일본 교과서에 대한 분석열기가 한 풀 꺾였고, 그 때 나온 책이 國書刊行會의『最新日本史』(2002)였다. 明成社의 책은 2003년부터 國書刊行會의 교과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國書刊行會에서 발행한 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일본의『徹底批判‘最新日本史’』(學習の友社, 2002) 등에서 검토한 글이 있다. 때문에 明成社의 교과서 자체를 검토하지는 않고, 발표자는 明成社에서 2003년 3월에 발행한『最新日本史 - 教授資料』(2003, 이하 教授資料)를 검토하겠다. 물론 국내에서 教授資料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도 검토의 작은 이유임을 밝혀둔다.

教授資料는 教師用指導書와 같은 성격인데, 교육현장에서 일본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

참조하는지 발표자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와 서술을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검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때문에 교과서에 담아내지 못한 우익의 역사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추측하기 쉽다. 더불어 일본 우익의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扶桑社의『新しい教科書 - 教師用指導書』(2002, 이하『教師用指導書』)도 참조하겠다.

우익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그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책의 서술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 질 수 있다. 오늘 발표문에서는 우익의 특징적인 역사관을 부각시키고 최근 일본의 교과서 검정경향도 예측하기 위해 2002년도 검정을 통과하여 2003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5점(A 4, B 1)도 비교 검토대상으로 하겠다.¹⁾ 이들 교과서의 2003학년도 채택현황을 보면, '일본사 A' 4점(74,000책) 가운데 山川出版社가 41.9%, 東京書籍이 26.6%, 實教出版이 18%, 清水書院이 13.5%, '일본사 B'(57,000책) 가운데 山川出版社가 98.1%, 明成社가 1.9%를 차지하였다.²⁾ 明成社의『最新日本史』의 2004년도 채택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 10개 고등학교가 늘어 25개 교에서 4,175책이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도 검정본까지 합치면, 30개 교에서 4,997책(0.81%)이 사용되고 있다.³⁾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발표자의 능력 부족으로 2004년도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채택된 일본사 교과서는 검토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오늘 발표문은 짧은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이번 심포지움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즉, 제2, 3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 전쟁중에 한국인에 대한 강제연행과 황민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각각 고찰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과서와 다른 서술내용,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일본 우익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2. 侵略을擁護한歴史認識-아시아·太平洋戰爭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작은 1931년 만주침략이었다. 教授資料는 전쟁의 발발이 관동군 소속 일부 장교의 조작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연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扶桑社의『教師用指導書』에는 학생들에게 만주침략이 당시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가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여론은 관동군의 만주점령을 지지하였는데, 문제는 이민족을 침략한 것에 대한 반성적 자기 성찰없이 당시 여

1) 오늘 검토할『최신일본사』B도 같은 시기에 검정을 통과했다.

2) 『教科書レポート』47, 2003, 67쪽.

3)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aitaku2004.htm>

론을 빌려 침략의 정당성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우익교과서의 일관된 특징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일전쟁의 계기였던 1937년 7월의盧溝橋事件에 대한 서술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教授資料에는盧溝橋事件의 원인이 된 "최초의 불법사건은 중국 제29군 내 병사의 우발인지, 공산당분자의 소행인지 판정 증거는 없지만,盧溝橋 주변의 중국 제29군 내에는 다수의 공산당원이나 그 지지자가 있고, 격렬한 항일의식도 갖고 있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여 아무튼 중국인의 불법행위이며 특히 공산주의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⁴⁾ 그런데 明成社의 교과서에서는 "북경 교외의盧溝橋 부근에서 돌연 일중 양국군이 충돌하였다"고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 教授資料의 내용과 무척 대조된다.⁵⁾ 이에 비해 山川出版社의 교과서에서는 발포자가 누구인지 여러 說이 있어 오늘 날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만 옆 날개에 언급하고 있다.⁶⁾ 쟁점 중인 사실에 대해 신중하고 솔직한 서술태도라고 하겠다.

중일전쟁 부분에서 明成社의 서술은 독특한 역사왜곡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과서는 중국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南京大虐殺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教授資料에서는 '南京事件'에 대해 무려 세 쪽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教授資料의 마지막 부분에는 "확실히 일부 일본군 장병에 의해 불법살해, 약탈, 장간 등의遺憾한 行爲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苛酷한 戰鬪에서 付隨의로 發生한 局部的 偶發의 '犯行'이다. 현재의 연구를 근거로 하면 '南京大虐殺은 없었다, 犯罪의 可能性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것은 있는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투 과정에서 '강간'조차 불가피한 행위로 치부해버리는 人命輕視觀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서술을 생략하는 것도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 우익은 教科書에서 鉴述을 省略함으로서 敏感한 爭點을 비켜가는 대신 教授資料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현장의 교사에게 왜곡된 사실만을 학생에게 전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비해 山川出版社는 살해당한 사람이 수천에서 30만 명까지 이른다는 說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南京事件'을 옆 날개에 서술하고 있고, 實教出版은 '南京大虐殺'을 '歴史のまど'라는 보조박스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하면서 30만 명이 살해당했음을 중국측에서 주장한다고 옆 날개에도 소개하고 있다.⁷⁾ 東京書籍도 '南京事件'에서 10수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라고 서술하며, 당시 일본 국민에게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수서원도 본문에서 '南京大虐殺' 때 일본군이 부녀

4)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2003, 650쪽.

5) 『最新日本史』, 明成社 2003, 245쪽.

6) 烏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2003, 113쪽. 또 다른 山川出版社의 책에서는 "다수의 일반 주민(부녀자를 포함하여)"이 살해되었다고 옆 날개에 서술하고 있다(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 외 11人, 『詳説日本史』B, 山川出版社, 2003, 333쪽).

7) 烏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113쪽; 宮原武夫 외 11人, 『高校日本史』A, 實教出版, 2003, 121쪽.

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주민을 학살”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⁸⁾

만주침략과 중국본토침략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조는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며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즉 “이 전쟁의 명칭을 개전직후에 대동아전쟁으로 결정하고(소위 태평양전쟁), 전쟁의 목적으로서 자존자위와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내걸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박스에 ‘대동아공동선언(1943)’을 사료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⁹⁾ 1941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전쟁의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교묘한 서술기법이다. 더 나아가 教授資料에는 대동아공동선언이 1941년에 발표된 大西洋憲章의 맹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서 1960년 제15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식민지독립선언과 같은 내용이었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⁰⁾ 大東亞戰爭이 植民地解放戰爭이었지 侵略戰爭이 아니었음을 戰後의 歷史가 證明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옹호의 논리는 扶桑社의 教師用指導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과서의 ‘아시아 諸國と日本’이란 소항목에서 ‘資料 2 植民地 解放と日本の功績’이란 자료를 교사가 읽게 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으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 해방에 대한 일본의 공적을, 두 개 노트에 써주세요.

● 이하의 점을 확인한다.

- 유색인종이 백색인종에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
- 일본인이 동남아시아의 사람에게 전쟁의 방법을 가르친 것.

3. 마무리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주장한 것은 전후에 이르러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트에 ‘○’으로 표시해주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트에 ‘X’로 표시해 주시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 ‘○’‘X’ 각각의 사람 수를 확인하고 서로 이야기 한다.

● 금일의 수업 감상을 쓰게 하고 수업을 마친다.¹¹⁾

용어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教授資料에서는 ‘15년전쟁’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장기간의 역사를 부정확하게 함축하는 개념이고,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원인·목적·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며, 1933년 5월 塘沽停戰協定 이후 노구교사건까지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약 4년간의 단절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²⁾

8) 田中彰 外 8人, 《日本史》A, 東京書籍, 2003, 139쪽 ; 佐佐木寛司 外 6人, 《日本史》A, 清水書院, 2003, 127쪽.

9) 《最新日本史》, 明成社 250쪽.

10)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673쪽.

11) 《新しい歴史教科書 - 教師用指導書》, 扶桑社, 2002, 333쪽.

이후 노구교사건까지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약 4년간의 단절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²⁾ 일본제국주의의 일관된 팽창욕구를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다. 동시에 教授資料에서는 태평양전쟁은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이 제시한 Pacific war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³⁾ 일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강요한 용어로서 ‘동경재판사관’의 하나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山川出版社의 책은 1941년 이후 전쟁을 ‘태평양전쟁’, 實敎出版의 책은 ‘태평양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옆 날개에 당시 대동아전쟁이라 불렀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⁴⁾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實敎出版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1999년에 출판된 『高校日本史』 A에서는 본문에 ‘태평양전쟁’이라고만 쓰고, 옆 날개에 “현재, 일본의 침략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쳤던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호칭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서술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생략되었다.¹⁵⁾ 서술 기법의 변화인지, 아니면 너무 드러내는 것을 우려한 검정지도의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쟁의 침략성과 아시아인을 시야에 넣으려는 작은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다.¹⁶⁾

3. 本心을 감춘 二重의 歷史敎述-苦痛歪曲·抵抗無視

전쟁의 당위성을 옹호하려는 역사관은 침략당한 민족의 고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明成社의 교과서와 教授資料는 이중플레이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황민화정책 및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明成社의 교과서와 참고자료를 검토해보자. 먼저 교과서서술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戰國의 악화 속에서 ……(인용자) 한편 조선·대만에서는 징병제가 실시되어 청년이 전투에 참가하였다(5). 또 많은 사람들이 징용되고 이론 각지의 탄광이나 공장에서 일하였다(6).

(5) 이 지역에서는 전쟁 말기 징병제로 되기 이전에는 지원병제도가 있었다.

(6) 소화10년대부터 조선·대만에서는 일본어교육과 신사참배, 일본식으로 氏名을 갖게 하는 創氏改名 등의 황민화정책을 밀고 나아갔다.¹⁷⁾

12)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668쪽.

13)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668쪽.

14) 鳥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126쪽 ;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A, 實敎出版, 127쪽.

15)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A, 實敎出版, 1999, 34쪽, 1998 검정본이다.

16) 두 교과서 같은 시기에 검정을 받은 東京書籍과 清水書院의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용어가 일반화되었다가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田中彰 外 8人, 《日本史》A, 東京書籍, 146쪽 ; 佐佐木寛司 外 6人, 《日本史》A, 清水書院, 132쪽.

17) 《最新日本史》, 明成社 251쪽.

교과서의 서술에서는 지배정책에 호응했다는 조선인의 능동성이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강제연행 또는 강제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성이 수동태문장으로 표현되어 강제동원의 진상을 되도록 약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教授資料이다. 뒤의 <부록>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위의 교과서 문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논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인 징병문제의 경우, 육군특별지원병에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입대원서를 낸 사람이 많았으며, 노력하여 일본군의 장교로 임관하고 출세한 경우도 많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에 끌려가 고통받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조선인의 자발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기조는 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동원되었으며, 대가도 확실히 지불했다고 하면서 정부와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조선인의 황민화를 위해 조선어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선인 스스로 조선어 교육을 철폐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에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시아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식민지인의 자발성을 강변하는 教授資料의 기본 내용은 교과서의 본문 서술과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며 무미건조하게 쟁점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서술했지만, 아시아의 주변국에서 그동안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教授資料에서는 자신들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明成社 교과서를 집필한 필진의 이중플레이는 扶桑社의 教師用指導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新しい教科書をつくる會'도 역시 '1. 국민의 동원'에서 "외지에 있던 중국인이나 조선인만이 아니라 외국인 포로나 형무소의 죄수까지 동원된 경우, 절의 종 등 금속이라는 금속은 전쟁을 위해 공출시킨 경우를 확인한다"라는 정도만 일본인의 전체 동원 양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였다.¹⁸⁾ 그들도 역시 아시아인의 고통에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익 교과서의 이러한 역사관은 결국 아시아 각 피지배민족의 저항을 무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아시아의 각 민족이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했는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인이 대동아공영권의 이상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 아시아인의 해방은 모두 일본이 연합국에 패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고, 나아가서 여전히 수동적인 아시아인의 이미지만을 일본인 학생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明成社와 扶桑社의 서술기조에 비하면 山川出版社와 實敎出版의 교과서는 '強制連行'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을 언급하는 측면이 있다.¹⁹⁾ 山川出版社는 본문과 옆 날개에서

18) 『新しい歴史教科書 - 教師用指導書』, 扶桑社, 334쪽.

19) 佐佐木寛司 外 6人, 『日本史』 A, 清水書院에서는 '강제연행'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용과 창씨개명,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로의 동원이 강제였음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고, 實敎出版의 책은 '大東亞共榮圈の實態'라는 박스를 만들어 강제동원의 내용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²⁰⁾ 아시아인의 피해에 주목하려는 서술태도는 피지배민족의 저항, 곧 주체적인 노력에 주목하려는 자세와도 연관이 있다. 山川出版社는 3·1운동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비해, 實敎出版은 '朝鮮・アジアの民族獨立運動と日本'이란 특별 내용을 두 쪽에 걸쳐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大韓民國臨時政府의成立과 滿洲에서의 抗日武將鬪爭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서술이다.²¹⁾ 東京書籍도 조선인을 포함하여 아시아인에 대한 강제연행에 주목하여 서술하면서, 아시아인의 주체적인 노력에도 주목하여 3·1운동과 5·4운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1940년대 들어서도 대동아공영권에 저항하는 아시아인들의 항일운동이 "戰後의 解放과 獨立의 準備로 連結되었다"고 하면서 지속되고 있던 저항운동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인의 主體的인 民族國家 設立과의 連續的인 觀點을 견지한 자세는 주목할만한 서술태도라고 볼 수 있다.²²⁾ 아시아인의 주체적인 노력에 주목하려는 實敎出版과 東京書籍의 노력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한 일본을 비판한 柳宗悅을 예로 들며 예전에도 한 일간의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²³⁾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피지배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實事求是의이고 率直한 接近姿勢가 결여된 우익 교과서의 二重性 또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4. 周邊國을 無視하는 未來指向

우익의 교과서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관, 공존공영을 말로만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는 서술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영토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일 것이다. 明成社의 교과서는 맨 마지막 쪽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

20) 鳥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 A, 山川出版社 122쪽 ;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 A, 實敎出版, 127쪽.

21) 鳥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 A, 山川出版社 91쪽 ;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 A, 實敎出版, 108 - 109쪽.

22) 田中彰 外 8人, 『日本史』 A, 東京書籍, 114 - 115쪽, 147쪽, 160쪽.

23)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 A, 實敎出版, 109쪽 ; 田中彰 外 8人, 『日本史』 A, 東京書籍, 115쪽.

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채 이고, 韓國이 島根縣의 竹島 領有權을, 또 中國 등이 沖繩縣의 尖閣諸島의 領有權을 주장하고 있다.

1999년 小泉 수상과 金正日 총서기와의 日朝首腦 會談으로 北朝鮮側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5명이 귀국했지만 지금도 모든 피해자의 안부 확인이나 가족의 귀국은 果되고 있지 않다.²⁴⁾

教授資料에서는 독도문제를 李承晚 대통령이 “國際法을 無視”하였고, 섬에 “등대와 숙사를 건설하고 경비대를 상주시켜 점거를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도시로부터 어업을 개척했는데 일본이 미국에 점령당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영유를 선언한 한국은 체면의 도리도 없다”고 끝맺고 있다.²⁵⁾ 울릉도와 독도는 고대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곳인데 그 역사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5명의 귀국과정에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측의 행위는 간과한 채 일본으로 자연스럽게 귀국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더구나 教授資料에서는 “여론의 확산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對北朝鮮 強硬 姿勢에 壓倒된 金正日 總書記는 마침내 납치의 일부는 인정했던 것이다”고 서술하여, ‘고백 외교’라는 측면을 간과한 채 북한이 마치 굴복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 13명 이외에 많은 일본인이 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 가족을 포함하여 전원을 구출하고 진상을 구명하는 문제는 “主權과 人權에 關係되는 重大하고도 緊急한 課題이다”고 끝맺고 있다.²⁶⁾ 물론 납치문제는 ‘주권과 인권’문제이며 그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패션한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 국내의 반북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내외적으로 다양한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 6자회담’에 이를 의제로 상정시키려고까지 하는 등 여전히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강경외교론을 기조로 하고 있다. 明成社의 교과서 내용과 인식은 바로 그와 같은 지점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우익이 진정으로 ‘주권과 인권’의 각도에서 납치문제를 보겠다면, 앞서 ‘제2, 3장’에서 지적했던 역사인식부터 수정해야 한다. 자신의 주권과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주권과 인권도 역시 중요하며, 그것도 더구나 일본 자신이 짓밟았던 주권과 인권이며 전후 다시 한번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 주권과 인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2002년 검정에 통과되어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2003년부터 새로 사용되고 있는 4 점의 ‘일본사 A’와 2점의 ‘일본사 B’ 가운데 영토문제와 납치문제에 유일하게 집착한 교과서는 明成社에서 출판한 것 뿐이라는 사실 또한 시사하는 해 주는 점이 많다. 즉 각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명성사의 교과서처럼 일본과 국제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너무 판이하다. 山川出版社의 ‘일본사 A와 B’ 모두는 지금까

24) 《最新日本史》, 明成社 270쪽.

25)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762쪽.

26)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762 - 763쪽.

지의 국제협력 과정만을 사실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평범하게 언급하고 있고,²⁷⁾ 實教出版의 ‘일본사 A와 B’는, 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戰後補償·戰後責任 문제를, 21세기 일본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환경·핵 문제 등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²⁸⁾ 또한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21세기 세계의 과제와 일본의 역할을 언급하는 한편에서 특별한 박스를 만들어 ‘歴史教科書と近隣諸國’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와 오늘날 내외의 시선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며, 清水書院의 교과서 또한 21세기 일본의 국제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과 2002년 북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²⁹⁾ 요컨대 발표자는 일본의 교육현장에서는 타국을 배려하는 국제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5. 맷음말

이상에서 일본 우익 교과서가 침략과 동원, 그리고 일본의 미래에 대해 학생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하고 있는지 教授資料와 教師用指導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2003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사 A와 B’를 대비시켜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 보았다.

2002년 검정에 통과되어 2003년 3월에 발행된 明成社의 교과서는 2001년 國書刊行會에서 발행한 것과 내용상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발행된 教授資料는 教科書보다 더 右傾化되어 있다. 그것은 日本 右翼 教科書의 特徵이기도 하지만, 다음 네 가지 정도의 二重의in敍述 傾向을 基本의in 特徵으로 한다. 즉, 우익 교과서는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대신, 피지배민족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통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간성을 극단적으로 짓밟는 玉碎라는 盲目的in 忠誠을 讚美하는 대신, 피지배민족의 反戰·獨立鬪爭을 무시하고 있다. 주변국으로부터 쟁점이 될 만한 민감한 사실에 대해 교과서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教授資料·教師用指導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익 교과서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현재의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현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반면, 아시아인의 고통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서술태도를 보인 교과서일수록 아시아와의 공존에 주목하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明成社의 교과서의 맨 마지막 문장처럼 “지금이야 말로 우리들은 일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³⁰⁾라고 하며 일본의 독자의 문화

27) 鳥海靖·三谷博·渡邊昭夫 外 1人,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160 - 163쪽 ; 石井進·五味文彦·笠山晴生 外 11人,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383 - 387쪽.

28) 宮原武夫 外 11人, 《高校日本史》A, 實教出版 178 - 181쪽 ; 脇田修·大山喬平 外 12人, 《日本史》B, 實教出版, 2003, 372 - 375쪽.

29) 田中彰 外 8人, 《日本史》A, 東京書籍, 196쪽 ; 佐佐木寛司 外 6人, 《日本史》A, 清水書院, 169 - 170쪽.

와 특수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현행 일본의 학교교육은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육성할 것”³¹⁾ 등 네 가지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고, 교과서도 여기에 맞추어 집필되고 있다. 일본 우익의 교과서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철저히 위배되는 책이다. 이들의 활보를 반쳐주는 정치인의 정점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과 아베신조(安倍晋三) 등이 있다. 그들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비롯한 舊戰犯勢力과 血緣的·精神的連結을 가졌기는 하지만 세대교체에 성공했음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이 공생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일본의 국민들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아시아인의 고통과 노력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노력하려는 또 다른 일본 국민들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만날 수 있었다.

<부록>

用語 朝鮮人·臺灣人の 徵兵과 徵用

… 이 高倍率(육군특별지원병의 높은 비율-인용자)에 관해서는 조선, 대만 어느 쪽의 경우도 일부 하급 관리에 의해 지원하도록 설득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입영을 영예로 알고 血書歎願하며 지원하는 자도 많았다. 난관을 돌파하고 陸軍士官學校, 海軍兵學校에 진학하여 日本軍 將校로 되었던 자도 적지 않다. …

… 조선에서 徵用이 시행된 것은 1944년부터이고, 이제까지는 官斡旋이라는 總督府에 의한 취직 알선이 행해졌다. 관알선은 원칙적으로는任意의 幹旋이고, 金錢의인 精算등이 정확히 행해졌으며, 紹介先의 기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죄를 물지 않고 식료품 배급등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1944년 이후 정식 징용의 경우는 도망하면 죄를 물었지만 같은 법률은 당시 많은 선진국에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여자학생 등의 공장 근로동원을 ‘여자정신대’라 칭하는 일이 있었지만, 소위 ‘종군위안부’의 경우를 ‘정신대’로 불렀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전후 양자가 혼동되어 논해지고 無用의 誤解를 초래하였다. 실제 ‘위안부’는 민간의 업자가 경영하고, 군이나 정부의 관여는 強引한 勸誘의 禁止 指導나 性病豫防措置 등 극히 일부 분야에 한정되었다. 모인 여성도 정부, 군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자에 의한 모집 권유이다. 1991년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 실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조선인 여성은 위안부가 된 이유에 관하여 ‘養父에게 팔렸다’, ‘조선인에게 유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用語 皇民化政策

(2) 조선반도에서 일본어 교육

…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어 조선어(한글)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수업 실시 유무는 각 학교의 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履修時間은 減少했는데 전체의 약

30) 『最新日本史』, 明成社 2003, 270쪽.

31)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 總則編』, 1999.5, 3쪽 ;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 總則編』, 1999.9, 3쪽 ;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 - 總則編』, 1999.12, 3쪽

9할의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은 계속되었다. 어느 쪽인가라고 말하면, 일본인이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조선어 수업을 계속한 학교가 많고, 조선인 교장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41년이 되면 小學校가 國民學校로 되지만, 朝鮮語의 取扱은 종전대로 였다.

1938년 南次郎 조선총독이 민의를 듣기 위해 열린 面談會에서 당시 조선의 유력한 지식인이었던 玄永燮은 조선어 사용의 전폐를 주장했지만 南 총독은 거부하였다.

1942년에는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이 공포되어 17-21세 미만의 미취학 청년을 대상으로 약 1년간 1일 3시간 야학으로 일본어 교육 등이 행해졌다. 라디오, 신문 등등 공공성 강한 분야에서는 점차 일본어 사용되었지만, 『毎日申報』처럼 종전까지 한글을 사용하고 있던 신문도 있었다.

(3) 神社參拜

… 1929년 京城神社에 朝鮮國魂神이 병기된 이후 조선의 각 신사에서 같은 병기가 실시되어 氏子의 數도 일본 내지인보다 현지 조선인 쪽이 현격히 많았다.

1925년 이후 조선에서도 총독부가 생도 아동 등에게 신사참배의 推獎을 시작했지만 그리스도계의 학교에서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創氏改名과 改姓名

… 이 창씨는 어디까지나 임의이고, 南次郎 총독도 강제 없도록 세 차례 훈령을 내리면서 접수를 개시하였지만, 총독부의 하급관리 가운데는 창씨자 수를 경합하는 자도 있어서 強引하게 설득하여 창씨시킨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한다. 또 당시 일본 내지나 만주로 이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대부분이 이미 일본식의 씨명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고, 조선족의 저명한 지식인 가운데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고 적극적으로 일본인으로 동화할 것을 주장하는 자(李光洙, 金文輯 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신청기간 중에 수리된 ‘창시’ 건수는 실로 전 戶數의 79%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창씨’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절대조건은 결코 아니었다. 朝鮮名인 채로 정치가나 군의 장교가 되었던 자도 많고, 중의원 의원 朴春琴이나 육군 중장 洪思翊은 일본인으로부터 신뢰와 衆望이 두터웠던 것으로 유명하다. ……

출전 : 『最新日本史 - 參考資料』, 明成社 2003, 674 - 677쪽.

주제포럼 1 | 역사교과서와 군국주의

발표자 : 북한 조대위 계성훈(부서기장)

일본의 역사외곡 및 군국화 책동의 기본목적은 군국주의 부활

친애하는 대표여러분.

지난 기간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여러 단체 및 인사들과 협력하여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를 폭로단죄하고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습니다.

파거 일본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는 응당 일제의 패망과 함께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것이였습니다.

일본이 범죄적과거를 청산하는것은 곧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총화로 되며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어오는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일본은 범죄적과거를 똑똑히 청산하지 않고 있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꾀비리내 나는 침략역사를 정당화하면서 기어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일본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념원에 배치되게 과거침략사를 재현시켜 아시아에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군국주의부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킬 목적으로부터 일본사회에 국수주의를 불어넣으면서 군국화의 기틀을 축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일본의 역사외곡 및 군사대국화책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역사적분야를 다 포괄하고있습니다.

나는 본 연단에서 최근년간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역사외곡 및 군국화책동에 대하여 토론하려고합니다.

먼저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외곡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전쟁의 패전과 범죄역사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일본국민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길들이기 위한 현대판 《황국신민화》, 《국민우매화》정책의 변종입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문화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의 전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도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관으로 일관시킨 도저히 역사교과서라고 말할수 없는 새로운 중학교용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황국사관적》인 국수주의를 로골화한 나머지 일본을 《신의 나라》로, 야마도민족을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묘사하고있으며 아시아침략에 나선 침략군을 《천황과 국가에 충직한 혈사》로,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찬미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대학살,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 등 특대형의 반인륜적죄악들을 모조리 삭제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태평양전쟁의 전파정이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극악한 범죄와 살륙으로 일관되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 오던 일제는 1905년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우리 나

라를 강점하고는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위협공갈, 강도적 협잡의 방법으로 이른바 《조약》들을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 내정권을 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40여년간 식민지통치 하에서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형언할수 없는 정신적굴욕과 육체적끈육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고유한 민족적풍습마저 없애 버리려 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민족의 뿌리를 버리고 《황국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 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일제는 중세기 노예매매를 방불케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조선청장년로력의 거의 전부인 840만여명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전쟁에 소모되는 병력,로동력을 충당하고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고 근 20만명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만드는 등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 막대한 자연부원과 일체 생산물들을 랙탈해 간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물질적피해액은 실로 천문학적수자에 달합니다.

이처럼 구일본의 강점통치시기에 조선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질적피해는 그 형태와 방법,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최대최악의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지워버릴수도 없는 20세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20세기 전반의 일본의 역사를 서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6000년전의 일도 아닌 불과 60여년전의 역사적사실, 그것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사변들과 범죄행위들을 외곡, 삭제 한 나라는 유독 일본뿐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외곡책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우익세력들은 《일본은 역사교과서로부터 일떠선다》고 하면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찬미하며 식민지지배를 정당한것으로 합리화하는 역사교과서를 기어이 교육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를 더욱 고취하려 하고있습니다.

둘째로 일본이 《정의의 위업》을 수행해 왔기때문에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국가적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의식을 국민들속에 심어줌으로써 범죄적인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데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정객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본인자신도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때문에 전쟁의 책임을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물을수 없다는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전범국이며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로 둔갑하여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전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것입니다.

역사를 외곡하여 새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주입하고 국수주의, 군국주의를 고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과거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과 죄의식감각마저 가질수 없게 만드는것은 극악한 정치적범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외곡을 반대비난하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공정한 사회여론과 국제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대신 더욱더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상전례의 고유한 조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하는 이른바 《독도령유권》까지 주장하면서 그를 교파서에까지 담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과거 침략에서 이루지 못한 영토팽창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강도적본색을 드러내놓은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문제는 신파초주의에 물든 국수주의자들의 이러한 론리, 엄청난 역사외곡이 일본의 우익정치가들과 정부당국의 무인조종하에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사회가 국도로 우경화되었다는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가 군국주의상징인 《히노마루》를 일본의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합법화한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폐망과 함께 마땅히 매장되어야 할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제정한것은 군국주의부활의 사상의식적기틀을 마련하려는 일본당국의 자세와 립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자》 참배문제는 국도로 우경화된 일본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현집권자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앞장에 서서 일제의 피묻은 침략역사의 상징이며 조선과 아시아인민들의 저주와 분노의 대상인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고 있으며 그를 정례화, 공식행사화, 대중화하여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침략역사를 옹호하고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침략전쟁의 하수인, 전범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떠받드는것으로서 일본국민들속에 침략의식을 깊이 심어주며 그들을 해외침략으로 내몰기 위한 전쟁선동인것입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구원하는 회》를 비롯한 극우익 단체들과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내세워 강제련행, 강제로동사실을 전면부정하고 대학입학시험문제의 채점항목에서까지 삭제하려하고 있으며 교과서검정과 채택제도의 개악을 통하여 역사외곡을 조장하고 그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폭력으로 대응하도록 부추기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동안 억제당하고 부활될수 없었던 일본군국주의가 최근년간에 와서 지배적인 사조로 대두하여 사회에 급속히 만연되고있으며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신파로와 같은 군국주의적견해와 립장을 가진 극우익분자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들의 정치적영향력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최근호는 일본이 1920년대부터 2차세계대전까지 짚은 민족주의적로선을 추구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에 큰 재난을 강요하였다고 상기시키면서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에서는 그때와 류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군사대국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본우익세력들은 제 2 차세계대전후에 채택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군국화실현의 전제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일본에서 헌법 제 9 조의 전쟁에 대한 제동기적기능이 지난 기간 각종 전시법들의 련이은 채택으로 이미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정신적으로는 혁사교파서개악과 암모도민족의 우월성주입, 정부각료들의 《야스구니진자》 참배의 공식행사화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국수주의적호름을 조장하는 한편 《유사시법제》를 정비하고 군사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을 통하여 군사대국화의 기틀을 축성해 왔습니다.

올해 4 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의 유권자 300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국제적공헌에 지금의 헌법으로는 대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요구한 사람은 응답자의 65%에 달하며 특히 전쟁수행권을 포기한다는 헌법 제 9 조 개악에 대한 지지를 44%로서 이 몇년간의 여론조사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3년 5 월에 《유사시》 관련 3 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일본은 《유사시》총리가 국회의 승인이 없이 《자위대》무력을 출동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에 충동원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번에 《유사시》 관련 7 개법채택을 통하여 《자위대》가 일본과 그 주변의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런 법적구속도 받음이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 2 차세계대전시기의 국가전시체제를 되살린 것으로서 지금까지 일본이 표방해 오던 《평화국가》로부터 전쟁국가에로의 이행을内外에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일본의 전쟁법인 《유사시법제》 정비가 완료됩니다.

일본의 《유사시법제》 정비는 명실공히 전쟁국가로서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본의 해외침략을 법적으로 허용담보하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환경조성을 다그쳐 나가는 한편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통하여 군국주의 침략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비지출이 계통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1980년대에 비해 2 배, 액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방대한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 들려지고 있는 예산은 무려 25 조 1600 억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이른바 《자위》의 명목으로 얼마 되지 않는 무력으로 창설된 특상자위대가 이미 10여개의 사단병력, 1,080여대의 땅크, 980여대의 장갑차, 1,850여문의 박격포, 3,230여문의 무반동포 등 강력한 무장장비와 실전능력을 갖춘 전투무력으로 되었습니다.

특상, 해상, 항공자위대 무력의 조직화, 현대화는 결국 일본의 《자위대》무력이 《전수방위》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위한 완전한 정규군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우익호전세력들은 《자위대》는 지진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수습하는데나 동원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작전기능과 전투경험을 소유한 《세계 제 2 경제대국》에 어울

리는 군사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파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프카니스탄전쟁을 계기로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장치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이번에 2 차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자위대》 전투무력이 이라크에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실현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변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일환으로서 핵무장화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계, 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너도나도 핵무장화의 《절박성》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2002년 5 월 내각판방장관 후쿠다는 공개적으로 현행헌법이 일본의 핵무장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에 대하여 이시하라 신파로와 같은 우익민족주의자들은 환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당수 오자와 이찌로는 《일본은 당장 3,000~4,000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들에서 필요한 플루토니움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일본을 당할자가 없게 될 것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학자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도로서 일본이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라는 것을 지체없이 선언하라고 일본총리를 부추기였으며 언론매체들은 앞을 다투어 이에 대해 광범히 보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어떤 항의도 표시된 것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2002년 여름에 벌써 일본이 이미 3 만 8,000 kg의 플루토니움을 저축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가서 그량은 14 만 5,000 kg에 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면 근 3 만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폭로하면서 핵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의 모든 쌍무적거래협정들을 취소할 것을 EU에 전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현 시기 일본의 군국주의책동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지난날처럼 되물은 《히노마루》를 펼력이고 《기미가요》를 웨치면서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익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고조되고 있는 국수주의분위기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미래의 침략전쟁을 담당수행 할 수 있는 무지한 《충신》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정치적 및 사회력사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김행되고 있는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우익세력들은 반공화국선전을 통하여 일본사회에 우리 나라에 대한 대결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을 군국주의부활책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당국의 목인비호하에 극우익분자들과 언론기판들에 의한 반공화국선전김빠니아가 거의 매일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련사무소에 총탄이 날아와 박히고 총련일군들이 백주에 헤로를 당하는 등 총련에 대한 탄압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심한 민족차별,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력행위들이 끊임없이 김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집권세력들과 정치가들 속에서 반공화국적인 전쟁폭언과 망언이 여느 때 없

이 자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 반공화국열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쿄도지사 이시하라는 얼마전에 자기가 수상이라면 《북조선에서 랍치자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당장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쟁폭언을 하였으며 자민당 간사장 아베는 일본 단독으로라도 《북조선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꺼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소동이 매우 도수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회》, 《가족회》, 《랍치의련》 등 반공화국단체들은 정부당국과 자민당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외환법개정안》,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 《재입국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박하였습니다.

일本国회에서는 얼마전에 《외환법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법화하였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외환법개정안》이나 우리 공화국의 비정기화물려객선 《만경봉-92》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모든 선박들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공화국호전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조일관계를 극한점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길을 터뜨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반공화국책동의 가장 위험한 표현은 바로 우리 공화국을 결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미국의 대조선군사적 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적 재침준비를 다그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일본방위청장관 이시바는 《일본은 자체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북조선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헌법은 나의 이 립장을 용인하고 있다.》는 전쟁폭언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반공화국호전분자들은 최근 《미싸일 및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를 전폐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익호전세력들은 올해에 들어와서 미국이 《북조선의 미싸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구실밀에 조선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려는데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저들이 주장하는 《선제공격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매체들을 총동원하여 일본국내에서 조선으로부터의 《위기》의식과 대조선적대감정을 대대적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위대》 무력은 서부일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정기국회에서 성립시키려고 하는 《유사시》 관련 7 개법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을 추구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조선전쟁에 직접 뛰여 들려는 침략야망을 폴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반공화국단체들과 우익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대결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파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청산,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며 나아가서 파거에 이루지 못한 조선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해외침략은 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되었으며 그 첫째가는 대상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표 여러분

우리앞에는 일본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당한 파거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고 역사의 정의를 회복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21 세기를 또다시 침략과 탄탈의 세기로 만들어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진보세력들 앞에 나선 공동의 과제입니다.

나는 이번 회의가 일본의 력사외곡과 군국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효과적이며 현실성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단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의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되리라고 믿으면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의 의의

장완익(변호사)

1. 서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04년 2월 13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3월 5일 공포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9월 6일 발족되어 약 4년간의 진상규명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법에 의하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 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내용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1)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 소속이다. 원래 장관급의 상임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비상임으로 결정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④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⑤ 사료관,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⑥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해당 시·도에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①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②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③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되는 진상규명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3) 사무국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진상규명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결정된다 하겠다.

3. 진상조사 업무

(1) 진상조사 대상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 조사할 대상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이다.

(2) 진상조사방법

(가) 진상조사신청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의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진상조사신청을 하면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나) 피해신고접수

또한 강제동원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피해신고를 하면 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여 피해신고 사실에 대한 1차 확인 작업을 별이게 되며,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희생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진상조사의 범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강제동원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상조사방법

진상규명위원회는 희생자, 친족,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진술서제출 요구, 관계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 실지조사, 감정 등의 조사 방법을 동원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진상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진상조사기간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2회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3년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바) 진상조사보고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는 ①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 ②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③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④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 그 밖의 관계자와 국가의 책임 ⑤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희생자와 유족 및 관련 민간단체의 노력의 내용과 성과 및 피해 ⑥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강제동원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강제동원피해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에 대한 권고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4. 사료관, 위령공간 조성

정부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의 위령공간과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령공간과 사료관 등을 정부가 계속 관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희생자와 유족이 그 주체가 되어 미진한 진상조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피해자와 유족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진상규명의 근거를 마련한데 불과하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정확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적 조치가 취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다른 부서나 관련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日帝強制占領下における強制動員真相究明特別法」の意義

張 完翼（チャン・ワニク）
弁護士

1. 序論

日帝強制占領下における強制動員真相究明特別法（以下、特別法）が2004年2月13日、韓国の国会で通り、3月5日に公布された。特別法に基づき、6ヶ月間の準備期間を経て、日帝強制占領下におけ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以下、真相究明委員会）が2004年9月6日に発足し、約4年間に渡り真相究明作業に取り組むこととなる。特別法によると、日帝強制占領下の強制動員被害は、「満州事変以後から太平洋戦争に至る時期において、日帝により強制動員され、軍人・軍属・労務者・軍「慰安婦」などの生活を強いられた者が被った、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を指す。

本文では、真相究明委員会の構成や内容及び課題について論ずることにする。

2. 真相究明委員会の構成

(1) 真相究明委員会

真相究明委員会は大統領が任命する9名の委員で構成され、国務総理に所属する。本来、長官（大臣）級の常任委員長1名と3名の常任委員で構成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たが、国会での審議過程において、全委員を非常任にすると決定された。真相究明委員会は、① 日帝強制占領下での強制動員の被害真相調査に関する事項、② 日帝強制占領下での強制動員被害に関する事項、③ 遺骸の発掘及び収拾に関する事項、④ 犠牲者及び遺族の審査・決定に関する事項、⑤ 史料館・慰靈空間の造成に関する事項、⑥ 戸籍登載に関する事項などの業務を行う。

(2) 真相究明実務委員会

該当する市・道には、市・道の知事を委員長とする15人以内の真相究明実務委員会が設置され、① 真相究明委員会より委任された日帝強制占領下での強制動員被害に関する事項、② 犺牲者と遺族の被害申告受付に関する事項、③ 被害申告に対する調査に関する事項、など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地方自治体に設置される真相究明実務委員会は、真相究明委員会を補助する役割を担う。

及び遺族の審査・決定に関する事項、⑤ 史料館・慰靈空間の造成に関する事項、⑥ 戸籍登載に関する事項などの業務を行う。

(2) 真相究明実務委員会

該当する市・道には、市・道の知事を委員長とする15人以内の真相究明実務委員会が設置され、① 真相究明委員会より委任された日帝強制占領下での強制動員被害に関する事項、② 犺牲者と遺族の被害申告受付に関する事項、③ 被害申告に対する調査に関する事項、など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地方自治体に設置される真相究明実務委員会は、真相究明委員会を補助する役割を担う。

(3) 事務局

真相究明委員会には事務局が設置され、事務局長と必要な職員を置くことができる。事務局にどれだけ多くの人員と予算が割かれるのかにより、真相究明作業がまとめて取り組まれるのかが決定されるといえる。

3. 真相調査の業務

(1) 真相調査の対象

真相究明委員会が真相を調査する対象は、満州事変以後、太平洋戦争に至る時期に、日帝により強制動員され、軍人・軍属・労務者・軍隊「慰安婦」などの生活を強いられた者が被った、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である。

(2) 真相調査の方法

(A) 真相調査の申請

強制動員の被害に対する真相調査のために、一定期間の間、被害當

事者または遺族が真相調査の申請をすると、真相究明委員会が真相調査の可否を決定する。

(B) 被害申告の受付

また、強制動員の被害当事者や遺族が被害申告をすると、真相究明実務委員会がこれを受け付け、被害申告事実に対する1次確認作業に取り組むことになり、それを基に真相究明委員会が犠牲者としての可否を決定する。

(C) 真相調査の範囲

真相究明委員会は強制動員の被害のみならず、関係機関が強制動員の問題をどのように処理したのか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ず、強制動員当時の社会的・歴史的状況に関する研究が可能でなければならぬ。

(D) 真相調査の方法

真相究明委員会は犠牲者、親族、関係者に対する陳述聴取、陳述書の提出要求、関係資料及び物の提出要求、実地調査、鑑定などの調査方法を動員し、政府外交通商部など関係機関を通して、外国の公共機関が保管している資料につき、該当国家の政府に対して公開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民間団体の諮詢を求めたり、真相調査業務の一部を専門家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E) 真相調査期間

真相究明委員会は初の真相調査開始決定日以後の2年間で、強制動員の被害に対する調査を完了せねばならず、必要な場合は6ヶ月の範囲内で2回、調査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最長3年間、真相調査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

(F) 真相調査報告書

真相究明委員会は調査期間が終了する日より6ヶ月以内に、真相調査

報告書を作成して大統領と国会に報告し、そ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真相調査報告書の内容としては、① 強制動員被害の真相と被害者の状況、② 強制動員被害の発生原因、③ 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原因、④ 強制動員被害の犠牲者、遺族、その他の関係者や国家の責任、⑤ 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犠牲者と遺族及び関連民間団体の努力の内容と成果及び被害、⑥ 真相調査に取り組んだが真相が明らかにならなかつた強制動員被害の内容と、真相が明らかにならなかつた原因などが含まれるべきであろうし、強制動員の犠牲者とその遺族の被害を回復するために国家が取るべき措置、真相が明らかにならなかつた強制動員の被害とその被害者に対して国家が取るべき措置などの勧告事項も必ず入るべきであろう。

4. 史料館・慰霊空間の造成

政府は特別法に基づき、強制動員によって志望した者を慰霊し、歴史的意味を噛みしめ平和と人権のための教育の場として活用するために、慰霊墓域、慰霊塔、慰霊公園などの慰霊空間と、強制動員被害の史料館、博物館などを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慰霊空間と史料館などを政府が継続して管理運営することは適切とはいはず、犠牲者と遺族が主体となって不十分な真相調査事業を続けられる財団の設立が望ましいといえよう。

5. 結論

被害者と遺族の粘り強い闘いを通して特別法が制定されたが、それは真相究明の根拠が用意されたに過ぎない。迅速かつ効率的に真相調査を行い、正確な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明らかにし、更に被害者と遺族が共感し得る国家的措置が取られるべきであろう。そのためには、真相究明委員会の位置づけと権限がより強化されるべきであり、他の部署や関連国らの積極的な協力が求められる。

(번역 강혜정)

주제포럼 2 강제동원 피해 문제

발표자 : 북한 조대위 손철수(서기장)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진애하는 대표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난날 무력으로 조선의 주권과 영토를 강탈한 일제는 전대미문의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랍치, 련행하여 로동노예로,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다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본 연단에서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수많은 전시죄행 가운데서 조선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련행하여 로동노예, 전쟁노예를 강요한글에 그들중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학살한 반인륜범죄의 책임이 바로 구일본정부와 기업체들에 있는데 대하여 토론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자료들은 물론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 가해당사자들의 증언, 그리고 관계자들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그 전모가 여지없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오늘도 일제의 천인공노할 강제련행 범죄를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년간 국내외의 해당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밑에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일본 아이찌현 나카시마비행기주식회사 한다제작소에 강제련행되었던 조선사람들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명부》에 들어있는 피해생존자 최익천과 피해자들인 리지백, 김봉룡의 유가족들을 찾아냈고 2002년 7월에 역사의 흙막속에 묻혀있던 구일본육군의 수송선 《다이헤이마루》 침몰사건의 체험자 황종수와 2003년 6월에 효고현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에 끌려갔던 피해생존자들인 박용수와 김명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진상을 밝히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할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고현 미쓰비시고베조선소와 구일본육군의 《농경근무대》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도 찾아냈으며 최근에 공개된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 129명의 명단에 기입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사업에서 비록 일련의 애로와 난관은 있지만 징병, 징용, 원자란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적지 않게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명단이 공개된것으로 하여 우리의 피해자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세기를 넘긴 오늘까지도 과거죄행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비인도적인 태도에 격분을 금치못하여 지난해 11월 6일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를 결성하고 현재 그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발굴된 자료들과 피해자증언들은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가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기업체들과 공모결탁하여 국가정책으로 감행하였다는것을 룬증하는 귀중한 증거로 됩니다.

본 연단에서는 이미 확인된 피해자들의 증언자료들을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조선인 강제현행과 관련한 법률적장치들이 조작된 1930년대중엽이후시기를 기본으로 이에 대한 구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려고합니다.

우선 과거 조선에서 감행된 청장년들에 대한 강제현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기본책임이 구일본정부에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지난시기 여러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일본정부가 물적자원략탈정책과 함께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실시한 인적자원략탈정책과 그 실현을 위해 추진시킨 《황민화》 정책의 호상관 계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고합니다.

일제는 무엇보다도 조선인 강제현행정책으로 책정하고 그 실시, 강화를 위한 악법들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 및 물적자원이 고갈되자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악명높은 《국가총동원체제》를 식민지조선에서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피한방울까지도 무자비하게 징발, 수탈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의 법이 미치는 모든곳에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모든것을 침략전쟁에로 총동원하기 위한 가장 가혹한 폭력을 동반한 파쑈적 강제동원 법이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이 《국가총동원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칙령》으로 수많은 《국가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적자원략탈정책과 인적자원략탈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일제의 인적자원략탈정책은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대포밥조달을 위한 《군사징집》과 경제적략탈을 위한 《로무징집》의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일제는 《군사징집》의 형태로서 《지원병제도》, 《징병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일제는 반일감정이 강한 조선청장년들에게 무기를 주게 되면 《대일본제국》에 총부리를 돌릴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그들을 침략전쟁마당에 끌어내기를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도발이후 날을 따라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모순이 격화되자 일제는 조선에서 《지원》의 형태로 위장된 강제군사징발제도인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1938년 2월 23일 《특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해 3월에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한 《지원병훈련소판제》를 제정하고 《지원병훈련소》를 설립운영하였습니다.

일제는 《지원병훈련소》에 끌어간 조선청장년들에게 갖은 멸시와 박해를 가하면서 군사훈련을 강요한후 그들을 침략전쟁터에 끌어갔습니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이후인 1941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청년특별현성령》을 발포하였는데 이 《법령》은 조선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

내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군사훈련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징집제도의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지원병제도》의 범위를 특군으로부터 《엄선주의》를 적용하였던 해군에까지 확대하였는데 1943년 7월 27일에는 《해군지원병령》을 제정공포하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지원병》의 명목으로 강제징발하여 바다에 내몰았습니다.

일제는 또한 《예파령》, 《소년합공령》, 해군《련습령》 등의 미명하에 조선의 나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끌어다가 군사훈련을 강요한 다음 전장에 내몰았습니다.

1943년이후 침략전쟁의 확대로 인적자원이 더욱 고갈되자 일제는 《지원병제도》로부터 《징병제도》로 그 형태를 바꾸고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보다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징발을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이 실현을 위해 경찰 및 헌병까지 동원하여 더욱 폭력화하였습니다.

일제는 《징병제도》의 실시를 공포한후 저들의 모든 군사관계폭력기구들을 총동원하여 민적, 호적조사를 선행시키고 《징병적령자》를 모조리 장악하였으며 1943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 그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한 후 모두 《합격자》로 정하고 1944년 1월부터 일본군부대들에 끌고갔습니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의 집단적무력반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분산배치하는 원칙에서 한개 부대에 몇명씩 배치하였으며 부대내에서 그들을 엄격히 감시통제하면서 민족적으로 멸시, 모독하고 박해하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을 전쟁마당에 내몰아 억울한 죽음을 강요하거나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제는 폐전말기에 조선사람들로 《국민의용군》을 편성하여 《인해전술》의 육탄으로 써먹으려 하였으며 1943년 7월에는 《녀자학도병》, 《녀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을 결정하고 애젊은 조선녀성들까지 강제징집하여 침략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제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사이에 조선에서 《지원병》, 《징병》의 명목으로 강제징발한 수는 무려 41만 7,000여명에 달합니다.

(* 《태평양전하종말기의 조선의 치정》, 간난도서점, 《전쟁과 조선통치》 대장성 관리국, 1947년판 등 참고)

일제의 인적자원략탈정책은 또한 《로무징집》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침략전쟁을 전아시아에로 확대한 일제는 필요한 군수물자보장을 위해 조선에서 지하자원의 랙탈과 전략물자의 생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로동력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제는 1937년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로무동원계획》에 따라 로동력을 징발하였는데 1939년 4월 일본내각의 《기획원》은 《조선인로무자징용계획》을 작성하고 그해 10월부터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사람들을 조선경내와 해외에로 강제징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에서 청장년들에 대한 강제징집을 원만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1939년 6월에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1940년 1월에는 《조선직업소개령》을, 1941년에 《로무조정령》을 발포하는 등 각종 악법을 날조하여 파쑈적인 로

동력관리기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경내에서 청장년들을 비롯한 조선인민을 《모집》, 《판알선》, 《근로보국대》, 《국민징용》 등의 형태로 닥치는대로 끌어가 군수산업과 공장, 탄광, 광산, 철도 및 도로부설장, 비행장건설장 등에 내몰아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조선경내에서 강제징발된 수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609만 2,000여명에 달합니다. (* 《전쟁과 조선통치》 대장성판리국, 1947년 참고)

이러한 일제의 로동력징발형태의 특징은 조선의 로동력전반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판할하면서 조선인민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동에 내몰았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인민이 군수산업과 군수자원략탈, 군수대상건설 등의 분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끌려가 군사적 《로무관리》 하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중일전쟁도발이후 청장년들이 대대적으로 군대에 징집된것과 관련하여 로동력부족이 더욱 심각해지자 일제는 조선에서 더 많은 청장년들을 해외으로 끌어갔습니다.

해외에로의 강제련행에서 기본대상지는 일본이였습니다.

일제가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에서 《모집》, 《판알선》의 형태로 강제징발한 청장년들의 수는 82만 7천여명에 달합니다.

(* 《사회운동의 상황》 내무성경보국자료 참고)

일제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조선사람들을 일본에 《징용》의 방법으로 강제련행하였는바 그 수는 무려 85만 8,000여명이나 됩니다. (* 《재일조선인의 개황》 공안조사청자료, 1950년 참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로동자들을 《징용》으로 일본에 《공출》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천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것과 일본어를 사용하고 로동현장의 로동규칙, 경찰과 감독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내려먹이였습니다.

일제는 강제징발한 조선사람들에게 장시간의 노예로동과 살인적인 작업조건, 종세적인 노예규률을 강요하는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일제는 《공장법》, 《공장취업시간제한령》 등에서 로동시간을 10시간, 12시간으로 규제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로동시간을 더 연장할수도 있고 이 규정의 적용을 금지시킬수 있다는 조항을 박아넣음으로써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일제의 악법이 조선사람들에게 강요한 노예적규률은 《대오의 조직》, 《집단숙식》, 《로동능률의 증진》, 《작업감독의 강화》 등의 폭압제도들을 합법화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였습니다.

《이동방지법》은 일제의 강제징발과 노예로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항투쟁의 한 형태였던 《도망》을 막기 위해 고안된것이였습니다.

이외에도 《종업자이동방지령》, 《로무조정령》과 같은 여러가지 형식의 악법들을

조작한 일제는 《도주자》들을 체포하여 징역형에 처하거나 집단폭행을 가하였으며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책임은 구일본정부와 함께 일본의 기업체들, 경영단체들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당시 일본의 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 자기 정부와 군부에 조선인강제련행정책을 책정하고 추진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기때문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이후 로동력부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1937년에 석탄광업관련기업체들과 토목건설회사 등 일본의 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조선인로무자의 집단적이입》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 요청에 따라 구일본정부가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일본내각의 《기획원》에 의하여 작성된 《로무동원계획》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기업체들은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노예사냥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인강제련행에 《모집》, 《판알선》, 《징용》의 3가지방식이 적용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연구조사들에 의하여 밝혀졌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 어느것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동반되었지만 일본의 기업체와 경영단체들이 판여하지 않고서는 그 집행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집》방식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기업체들의 신청에 따라 모집지역과 모집인원수, 모집기간을 할당하였지만 실제로 로무자들을 모집한것은 그것을 신청한 일본기업체들이였습니다.

《판알선》방식은 《조선총독부》와 그 지방행정기관들이 책임지고 로무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행정기관과 경찰이 로무자들에 대한 사냥을 진행하였지만 로무자들의 《이입》신청을 제기하고 신청된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어간것은 일본의 기업체, 경영단체들이였습니다.

《징용》방식의 경우 《징병》과 같이 철저한 강제성, 의무성을 띠였지만 《국민징용령》 제6조에 따라 《징용》신청이 있어야 하였는데 그 신청을 강하게 요구한것이 바로 일본의 기업체들이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려 간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민족차별을 강화하고 실행한 주범이 바로 일본의 기업체, 경영단체들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의 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에서는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반도로무원통리강요》을 조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 공장, 기업소들에 《특별지도법》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 《특별지도법》에 의하면 조선인징용자들이 일을 태공하거나 감독의 지시에 맞서게 되면 경한 경우에는 《않은 고문》, 《결식》, 《외출금지》, 《식용주사》 등의 제재가 가해졌고 중한 경우에는 《쇠사슬제재》, 《경찰서류치》, 《다꼬베야감금》 등과 같은 형벌들이 적용되였습니다.

후루가와광업 오미네탄광에서는 경도입구에 《징계소》를 설치하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감독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조선인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잡아다가 고문을 가한 다음 그곳에 가두어 넣고 경도로 출입하는 조선사람들이 보게 하였는데 이러한 형벌은 당시 그 어느 공장이나 회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였습니다.

일본의 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저들의 리윤추구를 위해 조선청장년들을 생명의 법적담보가 없는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현장에 내몰아 가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일본 《석탄통제회》의 로동부가 축소하여 작성발표한 《탄광로무통계표》에 의하더라도 1943년 4월 현재 일본의 주요탄광 179개소에 련행된 조선인징용자 83,299명 가운데서 채탄, 굴진 등 경내에서의 위험하고 힘든 로동에 종사한 사람들이 76,892명이나 되었으며 로동강도와 가동률측면에서도 조선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우심하였습니다.

일본의 기업체들, 경영단체들이 실시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민족차별행위는 생활과 로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감행되었는바 여기에서는 로임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합니다.

일본의 기업체들은 조선사람의 능력이 일본사람의 능력에 비해 8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사람의 절반도 안되는 로임을 조선사람들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징용자들은 그것마저도 《저금》, 《퇴직적립금》, 《후생년금보험금》, 《가정송금》 등의 명목으로 잘리우고 거의나 현금은 손에 쥐여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일본의 기업체들이 조선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로임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조선사람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그들의 로임을 공장, 기업소의 경영자금으로 횡령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이 폐망한후에 기업체, 경영단체들이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미지불임금조차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후생성은 1946년 10월 12일에 하달한 《조선인로무자 등에 대한 미지불금 기타에 관한 전》이라는 통첩에서 미지불금을 《공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기업체들에 지시하였으나 관계기업체들은 그 의무를 전혀 리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당국은 《공탁》조치이후 10년이 지나자 《공탁금》에 대한 청구가 없다는것을 구실로 그 시효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요된 이 《공탁》놀음은 결국 《공탁》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미지불임금을 동결시키고 전부 물수함으로써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없애버리고 나아가서 저들의 보상의무를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회책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일본의 관계기업체들은 광복후에 재일조선인단체들과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에 의하여 저들의 공장, 기업소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거액의 국가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현시켰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일본기업체들의 책임회피는 강제련행에 관여한 증거자료와 문건들을 소각, 은폐하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공개할데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의 전국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유골에 대한 아무려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은 또한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랑치하여 일본본토와 강점지역의 군사시설건설장과 군수공장, 발전소언제건설장, 비행장건설장, 철도건설장 등에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한꼴에 《비밀엄수》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집단학살한 책임에서도 절대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마쓰시로대본영지하공사장에 약 35만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강제련행하여 학대, 혹사하였으며 특히 《천황》의 침실공사에 동원된 180여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인로동자들을 《기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극비밀리에 집단학살한데 대해서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가고시마현 비행장건설공사에 끌려간 조선인징용자의 대부분이, 치시마제도에서 《가시마구미》에 의하여 5,000여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등 1939년-1945년까지만 하여도 구일본정부와 기업체들에 의하여 죽음의 고역장에 끌려가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57만여명에 달합니다.

구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의 집단살인만행은 일제의 폐망후에도 계속 감행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미에현 구와나시에서는 《동방특별작업대》 10종대내의 일본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조선인징용자들이 방공호에서 처참하게 집단학살되었으며 교도에서 폐진병들에 의하여 6명의 조선사람들이 살해되는 등 일제의 폐망후에도 조선인학살만행은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빈번히 감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구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은 죽음의 고역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광복의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선사람들을 가득 태운 《우끼시마마루》를 비롯한 배들을 의도적으로 폭파침몰시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조국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 헤매는 조선사람들을 《불법입국자》라는 땃지를 붙혀 닦치는대로 체포하고는 《수용소》들에 가두어넣고 야수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학살만행은 일본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악랄하게 추구한 《황민화》정책에 그 기초를 두고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책정집행된 《황민화》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사람들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의 냇을 송두리채 빼앗아냄으로써 조선사람들을 《천황을 위하여 순직하는 인간》, 즉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철저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이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1930년대부터 《진

자참배》를 의무화하고 1937년부터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든 학교와 직장들에서 외우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궁성요배》, 《히노마루》의 계양, 《기미가요》의 보금파, 《일본어상용》을 강요하였으며 머리형태도 일본식의 단발, 옷색갈도 일본식의 검은색, 신발도 일본식의 게다짝이 좋다고 선전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황민화》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1938년 7월부터 직속기관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을 내오고 도, 부, 군, 읍, 면, 부락 및 직장 등 전조선에 그 산하단체를 두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에 이르러 그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이행시켰는바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에서 침략전쟁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것과 물질적인것을 깡그리 동원하기 위한 전례없이 악랄한 파쑈적폭압운동, 략탈운동이였습니다.

일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을 《국민총력조선련맹》으로 개칭하고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등에 그 산하단체를 두었으며 1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애국반》이라는것까지 조직하고 당시 조선인구의 대부분을 여기에 망라시키는 등 패망할때까지 조선에서 《국민총력운동》을 추진시켰습니다.

일제의 《황민화》정책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공포, 《창씨개명》의 실시, 조선민족문화 및 역사말살책동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제가 1938년 3월에 세번째로 발포한 《조선교육령》은 철두철미 조선인 학생들을 《모범》적인 《황국신민》으로 길들여내여 《내선일체》실현에 기여하려는 침략적인 범리였습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조선에서 교육부문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전반분야에서 민족어말살정책이 크게 《전진》하고 가정들에서까지 일본어 《상용》이 실현된 사회적 조건에 맞게 《창씨개명》과 관련한 《법령》을 발포하고 민족의 징표인 성과 이름을 말살하기 위한 민족살륙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창씨개명》의 리면에는 조선인민에게 일본인의 풍습을 강요함으로써 조선민족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지구상에서 혼적조차 없애버리려는 구일본정부와 군부의 기도가 깔려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제는 강점기간 조선민족의 《렬등성》, 《후진성》과 《야마도민족》의 우월성을 조작설교하면서 저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도 조선에서 민족문화재보물을 닥치는대로 파괴학살하고 조선역사를 공공연히 외곡위조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존엄과 애국심을 압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었습니다. 제반사실은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서 부족되는 인적자원의 결정적인 보충수단으로 간주하고 조선에서 인적자원학살정책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하여 《황민화》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국가총동원체제》를 실시,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장치들을 단계적으로 꾸며내고 집행한 주범이며 일본의 관련기업체들이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공모자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파 그로 인하여 초래된 조선인대학살만행은 국제법은 물론 일본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은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기간 조선인강제련행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다국간조약과 2국간조약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계속 고집하면서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840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 랑치범행 등 반인륜적파거범죄에 대하여 《실정법상 보상근거》가 없다고 우겨대고있으며 지어 일본우익세력들속에서는 이러한 중대인권유린범죄가 《사실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에 전너간것처럼 역사적사실까지 외곡날조하는 망언까지 뛰여나오고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당시 조선인강제징용이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강제동원인원을 할당받아 사용한데 불과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이 없으며 미지불임금을 《저금》과 《퇴직적립금》과 함께 《공탁소》에 《공탁》하였기때문에 일체 채무가 없다고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들고 나오고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현 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이 패망한지 59년이 되는 오늘이 시작까지도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적극 편승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의 이러한 부당하고 그릇된 태도와 입장으로 인하여 오늘 과거에 강제련행되어 인간생지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거나 일본침략군의 대포밥으로 내몰리웠다가 겨우 살아 남은 우리 피해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우리의 결을 떠났으며 얼마 남지 않는 생존자들도 이제는 70-80의 고령으로서 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미국적인 현실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나는 본 회의에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지난날 일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수백만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충분히 협의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끌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인 강제련행의 법적 고찰

- 일본변호사련합회권고에서

소라노 요시히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전국련락협의회사무국장

1. 앞말

《평등, 정의, 인간성이라는 기본원리는 문명나라에 사는 모든 인간에 틀림없이 알려져 있다. 또한 I·G 사는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상으로 회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피고는 〈선별〉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 〈틀임없다〉. 왜냐하면 자사의 종업원의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주장하듯이 전체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피고가 유태인수인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리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명이다. 적어도 수용자들이 피고의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 있을 동안은 그 수용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원고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의무가 있어 친위대의 존재를 이유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불리행태로 또한 적어도 그 태만탓으로 동사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생활한 한 유태인이 동 수용소의 소유자인 독일 I·G 파르벤사를 상대로 하여 고소한 재판의 프랑크푸르트재판소의 판결(1953년 6월 10일)이다.

나치스독일이 유럽에서 유대인과 점령지주민에 대해 살륙과 비인도적학대를 계속하고 있을 때 대일본제국은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해 같은 만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극동군사재판이 끝난 후 일본에 있어 계속재판은 하지 않고 비인도적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책임은 추궁받지 않은 채 반세기 이상 지나갔다.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일본국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풍조가 현저히 되여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이 리행되지 않는 상황은 양자의 진정한 화해를 더더욱 곤난하게 하며 장래 아시아의 평화에 장애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2년 10월, 일본변호사회련합회(이하 일변련이라고 생략함)는 과거의 대일본제국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문제에 대하여 코이즈미수상과 련행기업인 코가기계금속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쿠마가야구미에 〈진상구명〉과

《피해회복》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다. 주(1)

조선인강제련행에 관한 일본변호사련합회(이하 일변련이라고 약함)의 권고는 처음되는 일이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일본련조사보고서

(1) 강제련행이란

우선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강제련행의 〈강제〉라는 용어에 대하여 보도록 하자.

보고서는 〈강제련행이라고 하는 용어의 〈강제〉란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 개념은 늦어도 19세기 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 초에는 국내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라고 하여 〈강제〉를 랍치와 같은 육체적인 강제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고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더우기 보고서에서는 〈강제〉에 대한 1993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정부답변 〈매우 자연스럽게 강제란 것을 접수하여 그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제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이라고 할가 공포시켜서 이런 방법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어떤 종류의 행위를 시킨 그런 경우도 넓게 포함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1993년(평성 5년) 3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7호 4페이지)를 인용하여 일본정부도 이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1932년에 일본인 알선업자가 나가사끼현의 녀성을 〈녀급, 녀중〉이라고 속이고 상해의 위안소에 련행한 사건에 관한 1937년의 대심원(당시의 최고재판소) 판결(유괴와 국외이송죄로 유죄로 함)로부터 당시 이러한 시점은 국내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주(2)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 그룹이 〈위안부〉 피해자는 〈좋은 일이라고 속았으므로 강제련행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그 잘못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강제련행의 범위 및 시기에 대하여 〈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는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의 실시에 의한 조선에서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서의 로무동원. ③ 군인, 군속, 여자정신대, 위안부로서의 전시동원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1939년 이전에 벌어진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라고 하여 조선민족의 의사에 반해 벌어진 전시 동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

보고서에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의 근거로서 《강제로동에 관한조약(ILO 제 29호 조약)》위반, 노예조약 및 국제관습법으로서의 노예제의 금지위반, 그리고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위반의 인정에 있어서는 ILO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에서 1997년 제85회기보고서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적용제외자유비해당의 결론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노예조약 및 국제관습법으로서의 노예제의 금지위반에 대해서는 1998년 8월의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있어서의 마크두갈 특별보고자의 《관습법에 의한 노예제도의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명확히 확립하고 제2차 대전후 형사재판의 준비로서 도쿄군사재판소조례와 뉴런베르크군사재판소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을 인용하고 있다.

더우기 지금까지 일본국내에서는 전쟁범죄(평화에 대한 죄, 통례의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가운데 《인도에 대한 죄》는 일본에 적용된 선례가 없다고 생각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는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2항(c)의 《인도에 대한 죄》가 아까다현 하나오카의 중국인강제련행의에 관한 군사법정(요꼬하마 제8군사령부)에서 적용된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변호인은 이 수용소의 중국인은 자유계약전쟁로동자라는 리유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재차 의문을 던지려 하고 있다. 앞서서 올린 1945년 12월 5일 연합국사령부서간 파라그라프 2,b(1)(c)는 〈절멸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적이동 기타 민간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의 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정하고 있다.》(1949년 5월 2일부 법무부장 재심사서 82페이지)고 하는 군사법정의 결론을 인용하고 있다.

즉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은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 권고의 내용

권고서의 결론은 강제련행, 강제로동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1. 피해실태의 파악과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 등 진상의 구명을 신속히, 철저히 실시할 것
2. 신청인들에 대해 사죄한 다음에 금전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이라 되여 있다. 수신인은 코이즈미수상과 현행기업이다.

이 권고의 결론은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데오·환·보벤 특별보고자의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갱생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보고서는 일반원칙의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2.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존중하고 또한 존중을 회복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피해회복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인권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수단을 취할 의무,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국가는 인권의 중대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회복은 범해진 침해의 재결과를 할 수 있는 한 제거 또는 교정하는 것으로써 또한 침해를 방지하고 저지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정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피해회복은 피해자의 필요와 욕망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침해의 정도와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비례되는 것이여야 하며 이하의 제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원상회복, 배상, 갱생, 만족, 재발방지보장». 또한 동최종보고서는 진상과 화해를 위한 칠레국민위원회 위원의 사려넘치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진상은 많은 리유로 절대적이며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배상과 방지를 위한 재조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고 방지되어야 할 것인가가 명백히 알려져야 한다. 더우기 사회는 간단하게 역사의 한 장을 끝내지는 못한다. 과거의 사실은 그 해석이 얼마나 달라도 부정할 수 없다. 공백은 가짜에 의해 혹은 모순되어 혼란한 과거에 대한 설명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은 분유된 귀속의식에 의존하는 것이여서 귀속의식은 한층 더 분유된 기억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진상은 또한 건전한 사회적쟁화의 방법을 가져다 과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돋는다.》

이 말은 현재의 가해국 일본에서 사는 우리 일본사람에게도 무겁게 울린다. 과거의 책임의 리행은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결론

이번 일본련권고와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조선인강제련행의 연구성과를 살려

조선인강제련행의 《강제》의 개념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내법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더우기 강제련행이 타 민족에 대한 노예적인 것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국제법에 따라 명확하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이어진 문제이다. 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피해자가 바라는 진상구명, 사죄, 배상, 재발방지의 전략이 되여 있지 않는다.

2002년의 평양선언 이후 일본국내에서는 과거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약 1년간 련일 《립치》의 문제만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상한 사태가 계속되어 있다. 결과 피해자와 자손에 대한 지跔음은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결코 무연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은 타민족에 대한 억압이 침략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견고한 평화의 초석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청산을 요구하는 모든 국제적인 연계를 깊여 나가자. (번역 김진영)

주

- (1) 이 권고는 1997년 5월에 지바시에 거주하는 피강제련행자 정운모(도찌기현 아시오동산에 련행)와 1998년 1월에 나고야시의 고 김갑렬(나가노현 히라오카발 전소공사에 련행) 유가족의 인권구제고소에 대해 약 5년 6개월간의 조사보고를 전제로 한 것이다. 련행기업이란 코가기계금속주식회사, 주식회사 쿠마가야구미이다.
- (2)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이 발견, 분석하여 《마이니찌신봉》(1997년 8월 6일, 오사카본사판)에 공표한 자료. 상세한 법적분석은 마에다 아키라 『국외이송목적 유괴의 공동정범』 『전쟁책임연구』 제 19호, 2~9 페이지 참조.
- (3) 토쓰카 에쓰로가 발견, 분석하여 『마이니찌신봉』(1997년 7월 3일, 오사카본사판)에 공표한 자료. 자세한 것은 토쓰카 에쓰로 『인권침해에 관한 불처별문제』 ICJ 국제재판부 도쿄실행위원회편 『판결되는 일본』(1996년, 일본평론사) 41~51페이지

*일본변호사련합회의 권고전문은 조선인강제련행 진상조사단

자료집 14 『조선인강제련행 · 강제로동 일본변호사련합회의 권고와 조사보고』 (조선어, 영어번역, 2002. 12)

朝鮮人強制連行の法的考察

—日本弁護士連合会の勧告から

空野佳弘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日本人側全国連絡協議会

1.はじめに

「平等、正義、人間性という基本原理は文明国に住むあらゆる人間に間違いないなく知られている。また I・G 社は、個人が負うべき責任以上に会社としての責任を回避することはできない。・・・被告は<選別>の事実を知っていたに「ちがいない」。なぜなら、自社の従業員の状況を把握しておくことは当然の職務だからだ。被告が主張するように全体に対する認識の欠如があったとすれば、それは被告がユダヤ人囚人の生命に関心を欠いていたことの端的な証明である。少なくとも収容者たちが被告の力の及ぶ範囲内にあった間は、その収容者たちを保護すべき義務があつたのである。原告の生命、身体及び健康を守るために、なし得ることをなす義務があり、親衛隊の存在を理由に義務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一被告は義務を実行しなかつたのである。こうした義務の不履行ゆえに、また少なくともその怠慢ゆえに、同社には責任があるのである。」

これは、アウシュビッツ収容所から生還した 1 ユダヤ人が、同収容所の所有者であったドイツ I・G フアルベン社を相手取って訴えた裁判のフランクフルト裁判所の判決 (1953年6月10日) である。

ナチスドイツがヨーロッパでユダヤ人と占領地住民に対し殺戮と非人道的虐待を続けているとき、大日本帝国は朝鮮、中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の人々にたいし同様の行為を行っていた。しかし戦後、極東軍事裁判が終わった後は、日本において継続裁判は行われず、非人道的行為に対する刑事民事の責任は追及されないまま半世紀以上がすぎた。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問題も同様である。今日、日本国内では自国の戦争責任を否定する風潮が目立ってきており、しかし、被害者の被害が回復されず、加害者の責任が履行されない状況は両者の真の和解をいよいよ困難ならしめ、将来のアジアの平和に障害を残すことになる。

こうした状況の中、2002年10月、日本弁護士連合会(以下、日弁連と略す)は、過去の大日本帝国による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問題に対し、小泉首相と連行企業である古河機械金属株式会社と株式会社熊谷組に「真相究明」と「被害回復」措置を講じるべきとの勧告を行った。注(1)

朝鮮人強制連行に関する日弁連の勧告は初めてのことであり、その内容を紹介したい。

2. 日弁連調査報告書

(1) 強制連行とは

まず、今回の日弁連調査報告書から強制連行の「強制」という用語について見てみよう。

報告書は「強制連行という用語の『強制』とは、肉体的・精神的強制を含むもので、この概念は遅くとも19世紀末には国際的に、20世紀初頭には国内的に確立されていた。」とし、「強制」を拉致のような肉体的な強制だけではなく、いい仕事があると騙し、移動することも含まれると見ている。

さらに報告書では「強制」に対する、1993年参議院予算委員会での政府答弁「ごく自然に強制と言うことを受け取りまして、その場合には単に物理的に強制を加えることのみならず、脅してといいますか、畏怖させてこういう方法を本人の自由な意思に反してある種の行為をさせた、そういう場合も広く含むというふうに私どもは考えています。」(平成5年3月23日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7号4頁)を引用し、日本政府もこの点に対しては異論がないとした。

また、1932年に日本人斡旋業者が長崎県の女性を「女給、女中」とすると騙し、上海の慰安所に連行した事件に関する1937年の大審院(当時の最高裁)判決(誘拐と国外移送罪で有罪とする)から当時このような視点は国内的にも確定させていたとした。注(2)

歴史を歪曲する一部グループが「慰安婦」被害者は「いい仕事だと騙されたので、強制連行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が、報告書はその誤り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また、今回の報告書では、強制連行の範囲、及び時期について「①国家総動員法に基づく労務動員計画及び国民動員計画の実施による朝鮮からの労務動員。②国民徴用令による日本国内からの労務動員。③軍人、軍属、女子挺身隊、慰安婦としての戦時動員のすべてを含み、1939年以前に行われた「誘拐」等の行為による結果も該当する」とし、朝鮮民族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戦時動員をすべて含むものとしている。

(2) 日本政府の法的な責任

報告書では日本政府の法的責任根拠として「強制労働ニ関スル条約(ILO第9号条約)」違反、奴隸条約及び国際慣習法としての奴隸制の禁止違反、そして「人道に対する罪」に該当するとした。

強制労働ニ関スル条約違反の認定に当たっては、ILO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の1997年第85会期報告書の「従軍慰安婦」に関する適用除外自由非該当の結論を引用している。

また、奴隸条約及び国際慣習法としての奴隸制の禁止違反については、1998年8月の国連人権小委員会におけるマクドウーガル特別報告者の「慣習法による奴隸制度の禁止は第2次世界大戦までは明確に確立し、第2次大戦後刑事裁判の準備として東京軍事裁判所条例とニューヨーク軍事裁判所条例に含まれている」との判断を引用している。

さらに、これまで日本国内では戦争犯罪(平和に対する罪、通例の戦争犯罪、人道に対する罪)のうち「人道に対する罪」は日本に適用された先例がないと考えら

れていたが、今回の調査報告書では極東軍事裁判所条例第5条2項(c)の「人道に対する罪」が秋田県花岡の中国人強制連行に関する軍事法廷(横浜第8軍司令部)で適用されたことを再度確認した。注(3)

報告書では「弁護人は、この収容所における中国人は、自由契約戦争労働者であるという理由で、裁判所の管轄権に再度疑問を投げかけようとしている。前掲1945年12月5日連合国司令部書簡パラグラフ2、b(1)(c)は、『絶滅的な大量殺人、奴隸化、強制的移動その他の民間住民に対する非人道的行為...』の犯罪に関する管轄権を定めている。」(1949年5月2日付法務部長再審査書82頁)という軍事法廷の結論を引用している。

すなわち、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戦争犯罪」であり、「人道に対する罪」に該当するとしているのである。

(3) 勧告の内容

勧告書の結論は、強制連行、強制労働の人権侵害に対し、

1、被害実態の把握と責任の所在の明確化など真相の究明を速やかに徹底して行うこと

2、申立人らに対し、謝罪した上、金銭補償を含めた被害回復の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と
となっている。宛名は小泉首相と連行企業である。

この勧告の結論は、1993年8月国連人権小委員会に提出されたテオ・ファン・ボーベン特別報告者の「人権と基本的自由の重大な侵害を受けた被害者の原状回復、賠償及び更生を求める権利」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を基本にし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同報告書は一般原則の部分で以下の通り述べている。

「2、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尊重し、また尊重を確保する国際法上の義務に違反した場合には、すべての国家が被害回復を行う義務を負う。人権の尊重を確保するための義務には、違反行為を防止する義務、違反行為を調査する義務、違反行為者に対し適切な手段をとる義務、被害者に救済を提供する義務を含む。国家は、人権の重大侵害に責任あると思われるいかなる人物も、自己の行動にたいする責任から免れることはないと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

3、人権侵害の被害者に対する被害回復は、犯された侵害の諸結果をできる限り除去または矯正することにより、また侵害を防止し、阻止することによって被害者の苦しみを救済し、正義を与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

4、被害回復は、被害者の必要と、要望に応じ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侵害の程度と、結果として発生した被害とに比例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以下の諸項を含むべきである—原状回復、賠償、更生、満足、再発防止保障」。

また、同最終報告書は、真相と和解のためのチリ国民委員会のメンバーの思慮に満ちた言葉を引用している。「真相は、多くの理由から絶対的で、放棄することのできない価値を持つと考えられる。賠償と防止のための諸措置を提示するためには、何が回復され防止されるべきかが明白に知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社会は、簡単に歴史の一章を閉じてしまうことはできない。過去の事実はその解釈がい

かに異なるとも否定してしまうことはできない。空白は嘘により、あるいは矛盾し混乱した過去についての説明により充たされるであろう。国の統一というものは、分有された帰属意識に依存するものであり、帰属意識はさらに分有された記憶に大きく依存するものである。真相は、また健全な社会的浄化の方法をもたらし、過去の再発を防止することを助ける。」

この言葉は、現在の加害国日本に住む私たちにも、重く響く。過去の責任の履行は私たちの社会のためにも必要なことであると。

3. 結論

今回の日弁連勧告と報告書は、これまでの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成果を生かし、朝鮮人強制連行の「強制」の概念が、国際法のみならず当時の国内法でも「肉体的・精神的」強制を含め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さらに、強制連行が他民族に対する奴隸制であることから日本政府の責任を国際法に基づき明確にしたのである。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過去の問題ではなく現在に引き継がれた問題である。この重大な人権侵害被害者が望む、真相究明・謝罪・賠償・再発防止はまったくくなされていない。

昨年のピョンヤン宣言以降、日本国内では、過去の問題が意図的に報道されず、約一年間、連日「拉致」の問題だけが大々的に報道される異常な事態が続いている。結果、被害者と子孫に対する嫌がらせは数百件に及んでいる。このことは、過去の清算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と決して無縁ではない。

過去の歴史的教訓は、他民族に対する抑圧が侵略戦争につながることを示している。アジアにおける強固な平和の基礎を築くために私たちは、日本の過去の清算を求めるあらゆる国際的な連携を深めよう。

注

(1) この勧告は1997年5月に千葉市在住の被強制連行者鄭雲模（栃木県足尾銅山に連行）と1998年1月に名古屋市の故金甲烈（長野県平岡発電所工事に連行）遺族の人権救済申立てに対し、約5年6ヵ月間の調査報告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連行企業とは古河機会金属株式会社、株式会社熊谷組である。

(2)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が発見分析し、『毎日新聞』(1997年8月6日、大阪本社版)に公表した資料。詳細な法的分析は前田朗「国外移送目的誘拐罪の共同正犯」『戦争責任研究』第19号、2~9頁参照。

(3) 戸塚悦郎が発見分析し、『毎日新聞』(1995年7月3日、大阪本社版)に公表した資料。詳細は戸塚悦郎「人権侵害に関する不処罰問題」ICJ国際セミナー東京実行委員会編『裁かれるニッポン』(1996年、日本評論社) 41~51頁。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의 경과와 금후의 과제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아리미츠 켄(有光健)

개별소송의 보고는 분과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 보고한다.

1. 일본국내에서의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의 경과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1990년에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송에 의해 최초로 제소된 이래 현재까지 32건이 제소되었다. ('위안부'는 제외) 내역은 한국인을 원고로 하는 것이 18건, 중국인을 원고로 하는 것이 12건, 네덜란드·연합국포로·민간억류자 등을 원고로 하는 것이 2건이다.

한국인을 원고로 하는 소송에는 이제까지 피고 기업과 화해가 3건(97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99년 일본강관, 2000년 후지코시) 실현했지만, 그 이후 2001년에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우키시마호생존자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기각된 이래 그 외 재판은 기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최고재판소에서 6건의 기각이 확정되었고, 3건이 최고재판소에서 다투고 있으며, 고등재판소에서는 2건, 지방재판소에서는 5건이 다투어지고 있다.

94년, 95년에 제소된 이래 네덜란드·연합국포로·민간억류자들의 소송에서도, 네덜란드소송의 1심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국제법 위반의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금년 3월에 함께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중국인을 원고로 하는 제소는 약간 늦게 제소되어, 1995년의 카지마를 상대로 한 하나오카소송이 최초로 97년에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2000년에 동경고등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각지에서 11건이 제소되어, 지방재판소 단계에서는 2001년 이후 일부승소 판결이 3건(2001년 류렌진재판, 2002년 미쓰이광산 후쿠오카소송, 2004년 니이가타항만소송)이 내려지고 있다. 기각된 케이스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또한 판단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전배려의무위반도 인정되었고, 국가의 책임면탈을 날카롭게 묻는 경향도 있다. 전후보상소송의 벽이 되었던 국가무책임(國家無答責)이나 시효·제척기간의 "시간의 벽", 조약·공동성명에 의한 청구권 포기설을 차차 부정하는 판례를 이끌어 냈고, 마침내 금년 3월 니이가타지방재판소에서는 거의 전면적이라 할 수 있는 승소판결이 내려져, 재판소가 국가와 기업에 배상을 명했다. 후쿠오카지방재판소·니이가타지방재판소는 72년의 중일공동성명에서 개인의 청

구권도 소멸했다고 한 일본국의 견해를 부정·비판하고 있다.

판결은 착실하게 진전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 중국과 한국 원고에 의한 소송 결과의 차이점도 나타나고 있다.

2. 미국 소송의 충격(인팩트)

일본 이외의 법정에서는 미국에서 일본기업을 피고로 한 청구가 1999년 9월부터 빈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의회가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나치와 그 동맹국 기업의 강제노동에 대한 시효를 2010년까지 10년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송에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미쓰이·미쓰비시등 일본의 주요기업과 그 현지법인이 피고가 되는 사태가 되었다. 과거 미국포로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필리핀 피해자들도 다수 제소하여, 일본의 외무성내에 일시 극도로 심각한 동요가 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 주미대사였던 애나이 준지(柳井俊二)씨는 일본의 전후보상문제가 독일과 같이 국내에서도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일본기업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질타·격려하였고, 소송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애나이씨는 1991년 8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무성 조약국장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상호 방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장본인이지만, 미국에서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모든 청구권은 포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주장하여,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로비하여 동조를 이끌어내, 미국정부 사법성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시켰다. 그 미정부견해의 영향하에 미국의 연방재판소·주재판소에서의 심리를 유도하여 결국 캘리포니아주법이 미국의 전권사항인 외교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미연방고등재판소·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개인청구권은 모두 포기되었다'는 이런 판단을 원용하는 형태로, 2001년에 동경고등재판소도 네덜란드인을 원고로 하는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국 포로들의 소송은 금년 3월말에 미국·일본의 재판소에서 동시에 종결, 패소했지만 미국의 사법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해 일본정부의 수면 아래서의 맹렬한 외교적·정치적인 움직임의 영향으로 일본국내에서의 소송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정부의 압력으로 일본기업측도 화해의 길을 거부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4건으로 이어졌던 화해의 길이 그 후 단절되었다. 미국의 정권교체로, 국무성등의 자세도 후퇴했다.

3. 한국·중국에서의 제소

미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2000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제소하였고, 그 심리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교섭시의 기록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파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00년 12월 이래 하북성(河北省), 서강성(浙江省), 상해(上海)등의 고등인민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 승소의 배경

① 외무성보고서(전국135사업소, 38,935명 기록)의 존재와 은폐공작의 실태 폭로

② 논점정리의 진화·재판소의 변화(재판소의 변화를 촉구한 일본사회의 변화)

5. 금후의 과제

① 진상규명과 전체상의 파악(피해의 실상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 => 재판관도 변화시키자)

② 전체적인 해결책으로서 입법해결안의 검토(재판소에 의한 서로다른 판단을 극복하고, 조기 해결을 위해 전체적 해결, 중국인/한국·조선인/연합국포로등의 케이스별로 다르게 대응)

③ 각국·각지의 소송관계자의 연대, 판결이나 정보의 국제적인 발신·활용(=>ILO등에의 영향·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정치적 압력의 형성)

자료① 최근의 판결

● 교토지방재판소, 중국인강제연행소송에서 '국가무책임론'을 격은 판단. 청구는 시효로 기각(2003년 1월 15일)

● 동경지방재판소, 중국인강제연행소송에서 '국가무책임론'을 부정하였으나 청구는 기각(2003년 3월 11일)

● 최고재판소, 관부·재일'위안부'소송, 한국강제연행소송등 한국 국적 원고의 전후보상소송 6건을 기각. (2003년 3월 25일~28일)

● 동경지방재판소, 일본제철가마이시소송(한국인 원고) 청구기각. (2003년 3월 26일)

● 오사카고등재판소, 우키시마호소송(한국인 원고)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전면 기각(2003년 5월 30일)

● 동경고등재판소, 한국유족회소송 항소를 기각. 안전배려의무위반은 인정, '국가무책임론' 부

정. (2003년 7월 22일)

- 미 연방최고재판소, 전 미군포로등이 일본기업을 제소한 강제노동소송 상고를 기각. (2003년 10월 6일)
- 최고재판소, 일본제철 오사카소송(한국인 원고)의 상고 기각. (2003년 10월 9일)
- 삿뽀로지방재판소, 중국인강제연행소송에서 '국가무책임론', '청구권소멸' 인정, 전면 기각 (2004년 3월 23일)
- 니이가타지방재판소, 중국인강제연행소송에서 '국가무책임론', '시효', '청구권포기'를 물리치고, 국가에도 최초로 배상명령 (기업과 연대하여 1인당 800만엔). (2004년 3월 26일)
- 최고재판소, 연합국포로·민간억류자의 청구 2건의 상고 기각. (2004년 3월 30일)
-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오노다시멘트를 상대로 한 정재원씨(미국적)의 소송을 기각하는 역전판결(2004년 3월 30일)

=> 후쿠오카고등재판소, 중국인강제연행후쿠오카소송 항소심 판결(2004년 5월 24일)?

자료② 3월 26일 중국인 강제연행·니이가타지방재판소 판결의 개요

- ◆ 니이가타항운과 일본국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강제연행·강제노동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무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성(相当性)이 없다'고 하여, '국가무책임론'을 물리쳤다. 그러나 2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배제는 인정하지 않아,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했다고 판단.
- ◆ 안전배려의무에 관해서는 '니이가타항운과 원고들, 국가와 니이가타항운과의 사이에 노동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 '의식주, 의료·노동관리의 실태에서 의무위반은 명백하다'고 인정. 소멸시효(10년)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실태를 은폐하고, 실질적으로 제소를 방해하는 등의 '불성실'을 지적, '사회적으로 허용된 한계를 면탈한 것'이라 원용을 부정
- ◆ 72년 중일공동성명등에서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다는 일본국측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인식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중국국민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포기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물리치고, 위자료로서 1인당 800만엔(이 가운데 2명은 640만엔과 160만엔)의 지불을 명령

- ◆ 헤이그조약 3조와 중화민국 민법등에 기초한 청구는 물리쳤다. 사죄광고 계제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광고계제는 불가'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③ 오노다시멘트(현=다이헤이요시멘트) 소장자료

* 미국소송 원고 = 정재원(Mr. Jae Won Jeong, 일본명=月城在源·쓰키시로 아리모토)씨

(1999년 10월 3일 로스엔젤레스 상급재판소 제소, 2004년 3월 30일 CA주 고등법원(항소법원)에서 기각)

2001.12.25에 발견된 조선 오노다시멘트 가와우치공장(川内工場) · 조선인 '징용학도의 개황'

「징용학도 입소시 · 6월 10일에 있어서 체중비교표」

西名	入院時年齢	大病時年齢	病歴	西名	入院時年齢	大病時年齢	病歴
月城在源	71.8	70.5		吳谷 喬	67.5	65.0	
東原在元	53.9	51.5		河原正雄	61.3	59.1	
吳山義穂	60.9	56.0		金洞 順	48.6	42.3	
金田吉謙	62.0	59.0		笠原 健	51.5	48.0	
金松朝光	35.0	34.0		松山重主	43.0	41.7	
鶴原勝鳳	61.9	57.0	入院中	豊山貞泰	53.0	49.4	
伊藤政生	67.9	53.2		金丸健一	71.3	71.2	
柳原義信	65.5	62.3		松山文源	51.5	49.0	
武田正純	47.7	44.7		金城昌錦	62.1	62.5	
金田健出	65.0	62.8		金城英基	47.2	46.3	
佐々木千鶴	64.9	57.0	入院中	松澤喜春	54.0	51.5	
朝山潤根	64.9	57.0		福田清知	43.3	42.6	
高田達雄	61.0	57.2		東本弘毅	55.5	52.5	
正木忠雄	61.0	57.0	肺結核	高峰徳喜	59.0	52.2	
桂義善	44.3	40.0		玄鶴瑞完	67.0	66.3	
				平均	60.0	57.8	

* 1944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징용학도 병명 및 결근일수 조사표'에는 매월 질병자가 늘고, 결근일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

(번역 김은식)

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の経過と今後の課題

有光 健
戦後補償ネットワーク世話人代表

個別の訴訟の報告は分科会で行なわれるので、全体的な動きを大まかに報告する。

1. 日本国での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の経過

日本の裁判所では 1990 年に韓国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訴訟によって最初に提訴され、以来現在まで 32 件が提訴された（「慰安婦」は除く）。内訳は、韓国人を原告とするもの 18 件、中国人を原告とするもの 12 件、オランダ・連合国捕虜・民間抑留者らを原告とするもの 2 件。

韓国人を原告とする訴訟では、これまでに、被告企業との和解が 3 件（97 年日鉄釜石、99 年日本鋼管、00 年不二越）実現したが、その後、01 年に京都地裁で浮島丸生存者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ものの、大阪高裁で取り消され、他は棄却判決が続いている。すでに最高裁で 6 件の棄却が確定し、3 件が最高裁で係争中、高裁で 2 件、地裁で 5 件が係争中。

94 年、95 年に提訴されたオランダ・連合国捕虜・民間抑留者らの訴えも、オランダ訴訟の 1 審東京地裁判決で国際法違反の事実は認定されたもの、今年 3 月にともに最高裁で敗訴が確定した。

中国人を原告とする提訴はすこし遅れて始まり、1995 年の鹿島を相手取った花岡訴訟が最初で、97 年に東京地裁で棄却されながら、2000 年に東京高裁で和解に持ち込んだ。その後、90 年代半ば以降、全国各地で 11 件の提訴が行われ、地裁段階では 2001 年以降一部勝訴判決が 3 件（01 年劉連仁、02 年三井鉱山福岡、04 年新潟港湾）出ている。棄却されたケースでも不法行為が認定され、まだ判断に揺らぎがあるものの、安全配慮義務違反も認めて、国の責任が鋭く問われる傾向にある。戦後補償訴訟の壁になってきた、国家無答責や時効・除斥期間の“時の壁”、条約・共同声明による請求権放棄説を次々否定する判例を引き出し、ついに今年 3 月新潟地裁では、ほぼ全面的といえる勝訴判決が出され、裁判所が国と企業に賠償を命じた。福岡地裁・新潟地裁は、72 年の日中共同声明で個人の請求権も消滅しているとの国の見解を否定・批判している。

判決は着実に前進してきているように見える。他方、中国と韓国の原告による訴訟の結果の違いも生じてきている。

2. 米国訴訟のインパクト

日本以外の法廷では、米国で日本企業を被告とした請求が 1999 年 9 月から頻発した。カリフォルニア州で州議会が民事訴訟法を改正し、ナチスおよびその同盟国の企業の強制労働に対する時効を 2010 年までの 10 年間不適用にして、米国内での訴訟に道を開いたためで、三井・三菱など日本の主要企業とその現地法人がこぞって被告にされる事態となった。米兵元捕虜だけでなく韓国、中国、フィリピン人の被害者らも多数提訴し、日本の外務省内に一時極めて深刻な動搖が起きたと伝えられる。この時期駐米大使だった柳井俊二氏は、日本の戦後補償問題がドイツのように米国内でも広がることを恐れて、日本企業に断固闘うよう繰り返し叱咤激励し、訴訟を全面的に支援した。柳井氏は、1991 年 8 月参議院予算委員会で外務省条約局長として、「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相互に放棄したのは国家の外交保護権であって、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答弁した当の本人だが、米国での訴訟に関しては、「サンフランシスコ和平条約によってすべての請求権は放棄され、最終かつ完全に解決済み」を主張し、米国政府に強力に働きかけて同調させ、米国政府司法省の同趣旨の意見書を提出させる。その米政府見解の影響の下に米国の連邦裁判所・州裁判所での審理を導いて、結局カリフォルニア州法が、国の専権事項である外交を制限するもので違憲であるとの米連邦高裁・最高裁の判断を引き出すことに成功する。「個人請求権はすべて放棄された」とのこれらの判断を援用する形で、01 年に東京高裁もオランダ人を原告とする訴訟で同趣旨の理由で請求を棄却する。連合国捕虜らの訴訟は今年 3 月末に日米の裁判所で同時に終結、敗訴したが、米国の司法判断を歪めた日本政府の水面下での猛烈な外交的・政治的な働きかけの影響が翻って日本国内での訴訟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日本政府の締め付けで、日本企業側も和解の道を選ぶことが許されなくなり、97 年から 00 年までに 4 件続いた和解の動きがその後途絶えてしまう。米政権の交代で、国務省などの姿勢も後退。

3. 韓国・中国での提訴

米国に続いて、韓国でも 2000 年 5 月に釜山地方法院に三菱重工を提訴し、その審理の中から、さらに日韓請求権協定交渉時の記録公開を求める訴訟も派生していく。中国でも 2000 年 12 月以来河北省、浙江省、上海などの高等人民法院に訴状が提出されているが、まだ受理されていない。

4. 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勝訴の背景

- ① 外務省報告書(全国 135 事業所、38,935 人記録)の存在と隠蔽工作の実態暴露
- ② 論点整理の進化・裁判所の変化（裁判所の変化を促がした日本社会の変化）

5. 今後の課題

- ① 真相究明と全体像の把握（被害の実相により深く迫る⇒裁判官も動かす）
- ② 全体的な解決策としての立法解決案の検討（裁判所によって異なる判断を克服し、早期解決のための全体的解決、中国人・韓国・朝鮮人・連合国捕虜などのケースの違いへの対応）
- ③ 各国・各地の訴訟関係者の連携、判決や情報の国際的な発信・活用（⇒IL0などへの影響・解決を促す国際的・政治的圧力の形成）

資料① 最近の判決から

- 京都地裁、中国人強制連行訴訟で「国家無答責」退ける判断。請求は時効で棄却。（03年1月15日）
 - 東京地裁、中国人強制連行訴訟で「国家無答責」否定し、請求は棄却。（03年3月11日）
 - 最高裁、関釜・在日の「慰安婦」訴訟、韓国強制連行訴訟など韓国籍原告の戦後補償訴訟6件を棄却。（03年3月25～28日）
 - 東京地裁、日鉄釜石訴訟（韓国人原告）請求棄却。（03年3月26日）
 - 大阪高裁、浮島丸訴訟（韓国人原告）で1審判決変更し、全面棄却。（03年5月30日）
 - 東京高裁、韓国遺族会訴訟控訴を棄却。安全配慮義務違反は認定、「国家無答責」否定。（03年7月22日）
 - 米連邦最高裁、元米兵捕虜らが日本企業を訴えた強制労働訴訟上告を棄却。（03年10月6日）
 - 最高裁、日鉄大阪訴訟（韓国人原告）の上告棄却。（03年10月9日）
 - 札幌地裁、中国人強制連行訴訟で「国家無答責」「請求権消滅」認め、全面棄却（04年3月23日）
 - 新潟地裁、中国人強制連行訴訟で「国家無答責」「時効」「請求権放棄」退け、国にも初の賠償命令（企業と連帯して1人800万円）。（04年3月26日）
 - 最高裁、連合国元捕虜・民間抑留者の請求2件の上告棄却。（04年3月30日）
 - 米カリフォルニア州高裁、小野田セメントを訴えた鄭在源さん（米国籍）の訴えを棄却する逆転判決。（04年3月30日）
- ⇒福岡高裁、中国人強制連行福岡訴訟控訴審判決（04年5月24日）？

資料② 3月26日中国人強制連行・新潟地裁判決のあらまし

- ◆ 新潟港運と国の民法上の不法行為責任を認定、「強制連行・強制労働のような重大な人権侵害に国家無答責の法理を適用することは、正義・公平の観点から著しく相当性を欠く」として、「国家無答責」を退けた。しかし、20年の除斥期間の適用排除は認めず、請求権は除斥期間の経過によって消滅していると判断。
- ◆ 安全配慮義務に関しては、「新潟港運と原告ら、国と新潟港運との間に労働契約に類似する法律関係が存在した」と認め、「衣食住、医療・労働管理の実態から義務違反は明らか」と認定。消滅時効（10年）については、企業と国が実態を隠し、実質的に提訴を妨害したなどの「不誠実」を指摘、「社会的に許容された限界を逸脱するもの」と援用を否定。

◆ 72年日中共同声明等で請求権が消滅しているとの国側の主張に対して、「日本政府の認識の如何にかかわらず、中国国民個人が被った被害についての国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までが日中共同声明によって放棄されたとは解し難い」と退け、慰謝料として1人800万円（内2人は640万円と160万円）の支払いを命令。

◆ ハーグ条約3条と中華民国民法などに基づく請求は退けた。謝罪広告掲載は「安全配慮義務違反の債務不履行の効果としての広告掲載は不可」として認めなかった。

資料③ 小野田セメント（現=太平洋セメント）所蔵資料より

* 米国訴訟原告=鄭在源（Mr. Jae Won Jeong ジェ・ウォンジョン、日本名=月城在源ツキヨ・アリモト）氏

（1999年10月3日ロサンゼルス上級裁提訴、2004年3月30日CA州高裁（控訴裁）で棄却）

01.12.25. に発見された朝鮮小野田セメント川内工場・朝鮮人「微用学徒ノ概況」「微用学徒入所時・六月十日ニ於ケル体重比較表」

氏名	八九時計 体重	九〇時計 体重	術前	氏名	八九時計 体重	九〇時計 体重	術後
月城在源	71.8	70.5		吳谷 育	65.7	66.5	
宋原在元	52.9	54.4		河東正雄	61.3	59.2	
姜山桂冰	62.9	59.0		金浦 勲	58.6	57.8	
金田二吉復	62.0	59.7	新郎正吉中	肇英 健	58.6	57.0	
金松朝太郎	53.0	54.0		松山草太	53.0	54.2	
鶴原勝	61.1	61.5	八郎中	豊山貞基	56.0	54.4	
伊藤万次生	52.7	52.8		金丸健浩	71.3	70.2	
柳川重徳	64.5	63.3		ね山文雄	51.5	52.0	
武田正雄	61.7	61.7		金城昌錦	67.1	67.3	
金田健一	65.0	64.8		金城誠基	72.2	66.3	
佐藤中作	64.9	64.2	上富中	和堂喜春	54.0	52.5	
朝山清根	64.3	64.0		福田清知	53.3	52.5	
新田運助	61.0	61.0		東本弘志	55.5	55.5	
正木忠雄	61.0	60.0	師道中	高峰義男	57.0	56.5	
桂澤泰介	64.2	64.0	新郎中	吉崎義完	67.0	66.5	
昭和二十年五月十二日未明ノモニノ合計				平均	60.07	57.80	

* 「自昭和19年2月23日・至6月30日微用学徒病名及欠勤日数調査表」には、月毎に疾病者が増え、欠勤日数が急増する様子が記録されている。

홍분의 전달과 학살에 이르는 구조

방재심리학자 고마츠 아키히라(小松昭良)

우선 금일 이곳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사정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시점은 방재심리를 기준으로 전시성적학살에 이르는 사람의 홍분과 히스테리를 주제로 말씀드리며, 부족한 점은 용서해주시고, 지적과 비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

근대 전쟁에서 나타난 침략의 특징에는 그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패권주의의 선양과 뒤이은 조약교섭 등의 정치적 압력, 다시 이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침공이라는 세 가지의 경로를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끝맺음이라 할 수 있는 최종경과에 이어서 학살·약탈이 완성한다. 여기서는 학살에 이르는 홍분구조를 嬰兒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점, 그 동물적 본능을 규제하는 데는 신체적 성장으로의 기대와 이에 따른 이성의 발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되며, 이런 관점에서 침략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는 당시의 국수주의자가 사상은 성인, 감성은 유아라 할 이성이 결여된 상태, 즉 불균형이 출현함에 따라 이성의 억제를 벗어나 쉽게 집단홍분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살육의 최대 구성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시아 평화의 모색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이성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

홍분의 전달은 영아에서 시작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 여기서 감정표현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 때의 감정은 노여움·즐거움·슬픔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체내에서 바깥세계로 나왔을 때의 경악, 공포라 하는 설도 있지만, 나는 피부에 닿은 외계의 영향, 즉 지각감각의 변화에 의한 일종의 호흡현상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영아는 울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할 방법을 본능적으로 발휘한다. 언어시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감각시야로 희로애락을 표현하려 한다. 이런 점을 보고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혼자여서 그 지각이나 감각은 본인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영아실에서 옆의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까지 울고, 마침내 그 울음소리가 다른 곳으로 전파된다. 이것이 장시간 계

속됨에 따라 곁에서 돌봐주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간호부, 또는 의사까지도 가끔 노이로제에 빠지기조차 한다.

히스테리와 자기도취

그런데, 이 운다는 행위를 성인에게 적용하면, 감정홍분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폭발, 즉 일종의 히스테리 발작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 히스테리는 우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승리의 희망, 환희, 정의의 구현화에 공헌하는 광영, 몸을 희생한 동료나 동포에 대한 슬픔에서도 일어난다. 적에 대한 복습과 목적 달성의 단결 등과 같은 경우에도 감정홍분이 일어나 여기에 도취되어 울고, 기뻐하는 등 일종의 황홀상태가 각지에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시에서는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또한 국가나 조직이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하에 놓고자 할 때, 침략의 징조로서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 거기서 이 히스테리의 징조를 전시준비로 구하고 있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개개인으로서 순전히 전투를 바라는 자는 적다. 국가는 그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3가지 경로를 만들어 자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1) 상대국이 열등해서 국민이 곤궁에 빠져 있다. 2) 그 이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자신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 3) 상대국에 자신들의 도움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조직)이 있어, 반일분자가 자신들의 병사를 해친다. 여기에 대동아공영권의 사상까지 더해지면 불만의 토양 위에서 있는 국민은 기쁘게 지원해서 총을 잡는다. 즉 아시아 해방이라는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만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도취를 이용해서 제국정부는 바깥세계의 정보를 통제해 미국의 인도적 정책과 국제연합의 활동이 국민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적성용어인 영어를 금지하는 것도 국민의 사상통일을 피해 참전의 기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홍분상태는 국가로부터 들은 사항을 유일하게 믿는 효과를 만들어 사람으로 왜라고 질문하는 정상적인 사고력을 잊게 하여, 사고과정에서 거쳐야 할 중간을 지나가 곧장 진실이라고 확신시키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람은 귀로 듣는 정보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하나의 사고과정, 즉, 언제·어디서·누가·왜·무엇을·어떻게라는 6개의 사고과정이 빠져버리고 만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이코 패스(psycho pass)라 부르고 있다.

6하원칙 when, where, who, why, what, how

이렇게 사고과정이 패스한 상태는 그 행위의 선악을 살펴보는 침착한 사고력을 잊어 누군가가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훔치면 자신도 흉내내어 훔치고서 그 행위는 동료를 구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성전에 몸을 바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 곳에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매달려 호소할 때 그것을 보고 잠시 마음이 움직이지만 자신들의 양심에 있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그 감정은 본능적으로 성전으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호소는 무시된다. 이 무시의 연속은 이성

의 방제가 붕괴되었음을 뜻하며, 마침내 방화와 강간, 살육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큰소리로 울면, 우는 이유를 모르는 다른 아기까지 우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로 나타냄으로써 복종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공포도 극복되기를 바란다. 사람은 때때로 공감하는 사태를 맞아 서로 어깨를 껴안고 우는 일은 흥분된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공감의 공유라 한다. 이 공감의 공유는 정의·불정의의 구별없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흥분으로 흥분의 유발이 시작된다. 즉 만행의 죄에 대한 공포에서 자기방어본능으로 스스로 흥분시켜 또 다른 만행을 거듭해 자기안녕을 구한 악순환으로 돌진해 들어간다고 생각된다.

비인도적 행위 전파,迎合反應

이 비인도적 행위는 하나의 경로를 거쳐 전파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이 집단의 일원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가담하는 것에 전체적 협조를 유지하여 스스로의 안녕을 전체에서 구하려 한다. 치환행위라 한다. 예를 들어 그 행위가 잔혹한 비인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참가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전체에서 고립된다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여기로 모이도록 한다. 한 사람이 박수치면 여기에 영합하려 한다. 대규모 데모에서는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관계없는 군중까지 여기에 참가한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과정이며, 왜라는 의문을 잊은 군중만이 아니라 이 폭도에 국가적 사명을 준 총을 쥐게 한 결과가 60년 전의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IH5W의 원칙 즉 이성의 열쇠가 흥분의 전달로 열려 도취성 폭력이 여기서 완성하게 된다. 도취성 폭력은 과거의 침략행위만 아니라 지금도 문명이라는 모습을 빌어 일어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자국의 주장을 견지하면 타국의 비난을 받는다. 비난은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체제 유지를 고집한다. 그 배경에는 자국의 국책이 유일 절대하다고 믿는 도취된 무지만을 볼 뿐이다. 무지는 다른 도취를 불러일으켜 파멸로 이끈다. 뉴스와 TV에 혹하지 않고, 정치의 소리에 혹하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사이코 패스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번역 김은식)

興奮の伝達と虐殺に至る構造

防災心理学者 小松昭良

初めに、本日この場において報告させて戴く事を光栄に思います。時間の都合もありますのでかいつまんで報告いたします。また、報告視点は防災心理を基準に、戦時性虐殺に至る人の興奮とヒステリーを主に話して参ります、至らないところはご容赦下さい、ご指摘、ご批評を賜れば幸いです。

概要：

近代戦争に見る侵略の特徴には、其の構造を完成させるための手段として、先ず、霸権主義の宣揚、ついで条約交渉などの政治的圧力、更にこれを完全なものとするための軍事侵攻と、3つのプロセスを経過す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仕上げとも言える最終経過について、虐殺・略奪が完成する。ここでは虐殺にいたる興奮構造を嬰児の時代に遡り、これらが人間のもつ本能であること、その動物性本能を規制するには、身体的成长への期待と、これに伴う理性の発育が必要であることが大切とされる、これに見る限り侵略による非人道的行為は、当時の国粹主義者が思想は成人、感性は幼児と言う理性が欠如された状態、即ちアンバランスが出現したことにより、理性の抑制が外れ容易に集団興奮を引き起こすに至った。この事が殺戮の最大の構成要因となったことを指摘し、今後のアジア平和の模索を続ける上でも日本全体の理性喚起が、必要不可分な要素であることを主張したい。

興奮の伝達は嬰児より始まる

人はこの世に生まれてくるとき泣き声をあげて生まれてくる。ここに感情表現の第一歩が始まる。

この時の感情は怒る・笑う・悲しいと言う表現ではなく、母体内から外界に出されたときの驚愕、恐怖と言う説もあるが、私は皮膚に触れる外界の影響、即ち知覚感覚の変化による一種の呼吸現象とであろうと理解する。こうしてこの世に生を受けた嬰児は、泣くと言う行為を通じて自らの感情を相手に伝える方法を本能的に発揮する。言語視野が発達していないので自らがもつ感覚視野から喜怒哀楽を表現しようとする。この事を見ても人は生まれたとき本来一人であり、その知覚や感覚は、本人のみが受けるもので、他の干渉を受けないものと思われてきた。しかし、育児室で隣の子供が泣くと他の子供まで泣き出す、やがて其の泣き声は他方に伝播し、これが長時間続くことにより付き添いの母親はおろか、看護婦、また医師までもが時としてノイローゼに陥ることすらある。

ヒステリーと自己陶酔

さて、この泣くという行為を成人に置き換えた場合、感情興奮がピークに達したときの爆発、即ち一種のヒステリー発作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ヒステリーは、泣くことのみに捉われず、勝利の希望、歓喜、正義の具現化に貢献する光栄、身を犠牲にした友人や同胞への悲しみ。敵への復讐と目的達成の団結など、何れの場合も感情興奮が発生、これに陶酔し、泣く、歓喜するなど一種の恍惚状態として各地で観察されている。特に戦時動乱では最も多く観察される現象である。また国家や組織が相手方を自らの支配下に置こうとする場合、侵略の予兆としてもこの現象が観察される。そこでこのヒステリーの予兆を戦時準備に求めてみた。

国家を形成する国民一人一人は純粋で戦闘を望む者は少ない。国家は其れでは困るので、常に3つのプロセスを作り自国民の反感を煽り立てる。例えば、1、相手国が劣っていて国民は窮状にあえいでいる。2、其の友人を解放の為にも自分達が立ち上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3、相手国に自分たちの救助を快く思わない人（組織）がいて、反日分子が自分たちの兵士を傷つけた。ここに大東亜共栄圏の思想でも加われば、憤懣の土壤にある国民は容易に歓喜し志願して銃を握る。

即ちアジア解放への正義の戦いと思い込んでしまうのである。また同時に、この陶酔を利用すべく帝国政府は外界の情報を規制してアメリカの人道対策や国連の動きが国民に入ることを防いでしまう。敵性用語の英語を禁止するのも、国民の思想統一を図り参戦の機運を盛り上げる為である。この興奮状態は、国家より聞いた事柄を唯一信奉する効果が生まれ、人として、なぜと疑問視する正常な思考力を失わせる、思考過程において通過すべき中間をパスして、直ちに真実だと確信させる効果を持っている。人は耳から入る情報に対し結論を導きだす前に、一つの思考過程、即ち、いつ・どこで・だれが・なに故に・何をして・どうなった。と言う六つの思考プロセスが必要である。これを六何の原則（1H5W）の原則と言うが、先ほどの陶酔性興奮では、この思考過程が抜け落ちてしまう。これを心理学ではサイコパスと呼んでいる。

※ 六何の原則・いつ、どこで、だれが、なに故、何をして、どうなった。

鎗採議訟夸。採扮・採侃・採繁・採絞・採葎・泌採。

(1H/5W 議訟夸) when, where, who, why, what, how.

この様に思考過程がパスされた状態は、其の行為の善悪を斟酌する沈着な思考力が失われ、調達と称し誰かが物を盗むと、自分も真似て盗む、その行為は、同僚を救い、國に奉仕するのであるから、アジアの解放の聖戦に身を捧げているとすら思い込む。例え其處に、被害者が持つて行かないでと足にすがり哀求し、其れを見て一時は心が動いたとしても、自らの良心に有る恐れや不安から逃れようと、其の感情は本能的に聖戦へと転化され、被害者の哀求は無視される。この無視の連續は理性の堤防が壊された事を意味し、やがて放火や、強姦、殺戮へと暴走するきっかけとなる。

これは、ちょうど嬰児が大声で泣くと、其の泣く理由を知らない他の嬰児まで泣き出すことに非常に類似して折り、其の要求を、他に対し大声で表すことによって、服

従への期待と自らの恐怖の克服をも期待する、人は時として共感する事態に接し、お互いに肩を抱き合って泣くなどは、最も興奮の典型的な姿で、共感の共有という。この共感の共有は正義・不正義の区別なく行なわれる特徴を有し、更なる興奮へと、興奮の誘発が始まる。即ち蛮行の罪に対する恐怖から自己防衛本能として自ら興奮させ、更なる蛮行を重ね、自己安寧を求めた悪循環へと突き進むと考えられる。

非人道的行為の伝播、迎合反応。

この非人道的行為は、一つの経路を経て伝播する特徴をもつ。人は集団の一員になったとき、これに加わることで全体的協調を維持し自らの安寧を全体に求めようとする。置換行為と言う。例え其の行為が無残で非人道的な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其処に参加しない自分には、全体からの孤立と言う恐怖が待ち受けている。この為、人が大声を出すとこれに会わせようとする。一人が拍手するとこれに迎合しようとする。大型デモでは一人が石を投げると関係のない群衆までがこれに参加する。見えるのは、問題に存在するであろう過程に、なぜと言う疑問の思考を失った暴徒でしかなく、この暴徒に國家性使命を与え銃を握らせた結果が60年前の悲惨な状況を作り出すに至った。1H5Wの原則、即ち理性の鍵が興奮の伝達によって外された陶酔性暴力がここに完成をみる。陶酔性暴力は、過去の侵略行為だけではなく、現在も文明と言う形を借りて行われている。過去を顧みることなく自国の主張を堅持すれば、他国からの非難を浴びる。非難は自尊心への攻撃と受け取られ、益々体制の維持に固執する。その背景には自国の国策が唯一絶対と信じ込み陶酔した無知しか見てこない。無知は更なる陶酔を呼び起こし破滅へと導く。ニュースやテレビに惑わされない、政治の声に惑わされないで、与えられた情報を自ら探索し、思考することこそが、サイコパスに陥らない唯一の方法である。

남경대학살

-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에서의 공포범죄행위

왕위민(王偉民) 남경대학살기념관 부관장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민중에게 일련의 침략과 폭행을 하였다.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2460년간의 역사를 가진 남경에서 인류 道德準則과 國際公約을 거리지 않고 6주간에 태우기, 죽이기, 유린하기, 강탈하기 등 방법으로 남경대학살을 벌어졌다. 일반 시민과 무리를 내려놓은 포로를 무려 30만명 이상을 죽이고, 불로 태우고 강탈해서 파괴하고, 제멋대로 여성을 강간, 윤간하였다. 그 참혹해서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폭행은 세계를 놀라게 하여 중국 침략 일본군의 폭행 중 가장 집중되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간에 일본군이 일반 시민과 무리를 내려놓은 중국 군인들에게 잔인한 대학살을 벌어졌다. 조난자수가 30여 만이었다. 그 중에 집단학살을 하고 부수고 혼적까지 없애는 수는 무려 19여 만명이었고 분산되는 학살 후 시체가 慈善團體에 의해 매장하는 수는 15여 만명이었다.

일본군의 살인 수단은 극히 잔인했다. 일반 총살 이외, 머리 찍어 죽이기, 머리 쪼개어 죽이기, 칼로 뚫어죽이기, 가슴 뚫어죽이기, 할복, 사지절단, 시체절단, 묻어죽이기, 태워죽이기, 얼어죽이기, 끊어죽이기, 폭격하여 죽이기 및 집단을 기관총으로 뿐만 아니라 총검으로 다시 뚫어죽여서 시체를 강으로 던져 버리는 등 다양한 잔인한 살인방법을 택하였다.

동시에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하는 날부터 제멋대로 여성을 강간하고 윤간하였다. 불과 한 달만에 남경 시내에 2만번 강간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여성은 강간당한 후에 또 참혹한 살인을 당했다. 일본군이 제멋대로 강탈하고, 공장, 상점, 기관, 학교 등의 설비, 자재, 상품에서 주민의 식량, 가축, 옷, 금전 및 진귀한 서적, 그림, 문물까지 강탈당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열 집에 아홉은 텅 비었다. 약탈 후 또 불로 태웠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주택을 다 불로 태웠다. 남경시의 3분의 1이가 잿더미로 변하였다.

國際公約을 위반하는 집단학살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미 무기를 내려놓은 중국 군인과 시민을 수색하여 체포했다. 國際公約을 거리지 않고 계획적인 대규모 집단학살을 벌어졌다.

대량의 확실한 사료 및 계속 발굴된 동포 합장지에 따르면 당시 집단학살은 남경 시내 외를 골고루 퍼졌다. 지금 中山埠頭, 魚雷營, 草鞋峽, 燕子磯, 麟江門, 煤炭港, 東郊, 漢中

門外, 北极閣, 普德寺, 上新河, 清涼山 및 江東門 등 지역은 당시 학살 및 매장했던 현장이다.

예 : 漢中門外대학살

1937년 12월 15일 일본군이 “國際安全區” 司法院에서 피난하고 있는 남경시민 1000여 명과 國家安全區 질서를 유지하여 무기 없는 중국 경찰 400여 명 및 기타 시민 총 2000여 명을 漢中門外로 압송하여 기관총으로 소사를 한 다음에 총검으로 다시 뚫고, 그리고 나서 나무에다가 휘발유를 뿌려 시체를 태웠다. 1938년 2월이 되어야 慈善團體 赤十字會가 시체를 거두어 당시 漢中門外 廣東公墓과 二道更子 일대에서 시체를 매장하였다.

漢中門外대학살 참상을 목격했던 경찰 陳永清은 1945년 11월 2일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民國26년(1937년)12월 15일 일본군 나타지마 부대는 南京難民區의 司法院에서 군민 및 경찰 등 2000여 명을 조사해 냈고 기관총 12자루로 이 사람들을 漱中門外로 압송하고 나서 行列별 끈으로 묶어서 기관총으로 소사하였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나무에다가 휘발유를 뿌려 태웠다.

伍長德은 남경 同仁街 채소시장 퇴직자이다.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할 때 그는 29살이었다. 1937년 12월 15일 오후 5시 경, 漱中門外 秦淮河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쌍인 시체무더기에 엎드리고 사람들이 잇따라 그의 몸에 엎드렸다—일본군이 기관총으로 소사한 다음에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총검으로 죽였다. 칼끝이 그의 등위의 그 사람의 시체를 입어서 그의 등에서 5치 긴 총검 흉터가 남았다. 1947년 7월 그는 증인으로서 도쿄국제군사법정에 참석하였고 남경대학살조난동포기념관 개관 이후 그는 여러 번 와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그의 비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일본군의 잔인한 폭행을 폭로하였다.

다른 한 가지 예 : 草鞋峽대학살

중국 침략 일본군이 남경에서 벌어진 대학살 중에 草鞋峽대학살 조난자가 가장 많았다. 조난자수는 무려 57400여 명이었다.

草鞋峽은 남경 성북 楊子江邊의 幕府山 아래에 위치한다. 1937년 12월 14일 일본군 제13師團 山田 분대는 幕府山 아래를 도착하고 第65聯隊은 양자강변까지 쫓아내고 성외로 도망칠 대량 난민 및 무리를 내려놓은 중국 군인들을 幕府山 아래로 구치하고 12월 18일 이를 57400여 명을 草鞋峽로 압송하여 기관총으로 소사하고 총검으로 죽이기 나서 휘발유를 뿌려 태웠다. 잔여 유공은 양자강으로 던졌다.

인간성 상실되는 분산학살

중국 침략 일본군이 계획적인 대규모 학살을 벌어지는 동시에 남경 시내에 잔인한 분산 학살도 벌어졌다.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 第6師團 長谷壽夫가 부대를 이끌고 中華門을 항락하여 中島,

牛島, 末松 등 師團도 이어 남경 시내에 쳐들어갔다. 그들이 즉시 시내 각 구로 분산하여 시민과 무리를 내려놓은 군인에게 학살을 폈다.

남경의 雨花臺 中華門 및 시내 각 지역에는 당시 피해를 입었던 생존자들이 살고 있다. 秦淮河 물자 재생센터의 퇴직자 朱錫生 할아버지는 당시 下浮橋 福音堂으로 피난갔는데 일본군에게 잡혀서 秦淮河邊에서 어떤 일본군이 칼로 그의 뒤쪽 목을 찍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朱錫生 할아버지 목에는 아직 3,4cm 긴 흉터가 남아 있다.

지금 中山門外 竹林新村에서 사는 夏淑琴 할머니가 당시 학살의 처참한 광경을 들이켜 볼 때마다 가슴 찌르는 고통을 겪어야 하답니다. 할머니에 의하면: “일본군이 남경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한 가문에 2집 총 13식구가 살고 있었다. 불과 짧은 10 몇 분만에 이웃집 4식구와 우리 집 7식구가 모두 일본인한테 죽였다. 겨우 1살 밖에 안 되는 누이동생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 나와 3살짜리 누이동생은 유행히 살았다. 누이동생은 당시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나의 등 2군데 칼질 당하고 왼쪽 팔 1군데 찌르게 되어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다.”

당시 남경에서 도망쳐 낸 중국 어떤 군인은 1938년 2월 武漢 <大公報>에서 이렇게 폭로하였다. “거리에서 가는 거 정말 괴롭다. 길거리 곳곳에서 다 동포의 시체였고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지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보았다. 피와 젖어진 살 및 옷이 섞어서 도저히 얼굴 알아보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군이 방화하여 집을 태우고, 주인이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강요하여, 혹은 기타 주민이 나와 불을 끄도록 기만하고, 기회를 잡아 살해했다. 남경 石榴新村에서 사는 左涌得 할아버지와 孫慶有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소하였다. “저녁에 일본군이 豊富路 衛生所에서 불을 놓고, 불기운이 매우 커서 근처의 주민은 모두 불을 끄러 달려갔다. 그러나 불을 끄는 사람이 근처에 다가오자 兵營에 숨어 있었던 일본군이 벽을 넘어 총검을 들어 불을 끄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찔렀다. 찔러 죽인 후 불더미에 던졌다. 심지어 산 채로 불더미 속으로 밀어 태워죽였다.” 孫慶有 할아버지는 불을 끄는 중에 일본군에 의해 머리, 등, 경부, 다리부위와 둔부 등 부분을 8군데 찌르고 지금도 흉터 남아 있다.

이 동안에 일본군이 칼로 찍고 쪼개어, 가시로 몸과 눈을 찌르고, 살아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만드는 수많은 잔인한 살인폭행을 저질렀다. 그들의 짐승같은 폭행은 다 헤아릴 수 없다. 남경 시민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당했다.

사납고 잔인한 살인경기, 말을 추도하는 살인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하기 전에 중국인 학살로 유명한 일본군 제16사단 나카지마 부대 속에 向井敏明과 野田毅라는 소위 장교가 있었다. 둘이 “살인경기”하자고 했다. 남경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면 누가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약속했다. 句容에서 湯川까지 向井敏明은 80명을 죽이고 野田毅는 78명을 죽였다. 그러나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다. 12월 10일 정오에 살인폭군인 둘이 칼날이 파손되어

있는 칼을 손에 들고 紫金山 아래서 만났다. 野田毅가 “내가 105명을 죽였는데 당신은?”라고 向井敏明에게 물었다. 向井敏明은 “나는 106명을 죽였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둘이 크게 웃었다. 그러나 누가 먼저 100명을 죽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둘이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하고 다시 150명 죽이는 경리를 하자고 했다. 11일 경기가 또 시작했다.

이런 잔인무도한 야만행위에 대해서 일본군의 종군 기자 스즈키, 아사미 등은 국내에 특별전문을 보냈다. 이런 “武士道精神”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양하였다. 도쿄의 <日日新聞>에서 “百人斬大接戰”, “百人斬超記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두 살인폭군의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向井敏明과 野田毅가 “살인경기”를 하는 동시에 남경의 서남 교외 일대에서 제6사단 45연대의 대위중대장 田中軍吉은 ‘助廣’군도를 들고 포로 및 비군민 무려 300여 명을 죽이므로 도쿄 신문이 찬미하는 또 다른 ‘영웅’이 되었다.

일본군이 또 ‘살인으로 말을 추도’하는 폭행을 했다.

일본군의 군마 2마리가 郭光貴 집의 구석에서 비끄러매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날아오는 탄알에 의해 죽었다. 일본군이 方斗斗, 熊順堯 등 할아버지들에게 무덤을 파사 말을 매장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근처 주민 집에서 이불을 빼앗았다. 목수 宋士波를 잡아서 말의 위폐를 만들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나서 위폐에다가 무슨 군마의 묘라는 글자를 써놓았다.

일본군이 총검을 들고 이들 9명에게 말을 이불로 잘 포장하고 이미 이불로 바닥을 깔아놓은 무덤에 넣도록 강요했다. 위폐까지 끊어놓았다. 마치 고관귀인을 안장하는 것과 같이 말 묘지를 만들었다. 착한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만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살인이 버릇이 된 일본군이 9명 할아버지의 머리를 잘라서 말의 묘지 앞에 배열하고 말을 추도하였다.

일본 침략군이 무고한 중국백성 9명을 죽여서 그들의 2마리 말을 추도하는 폭행에서 그들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범 松井石根도 “일본군의 폭행은 천황의 위엄을 깨끗이 없애버렸다”고 고백했다.

正義의 역사심판

1946년 4월 29일 일본 도쿄에 마련한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 도조 히데키 등 28명 A급 전범들을 공식으로 기소하고 심판을 시작하였다.

법정에서 수거된 증거는 4336건이고 증인 증언은 1194건이었다. 심판은 2년 6개월 거쳤다. 이런 대규모 국제적 심판은 세계에 전대미문이다.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A급 전범은 평화를 파괴하는 죄, 전쟁죄 및 人道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것을 증명해 주었다. 25명 일본 A급 전범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중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은 紞首刑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한 최초 6주안에 남경 및 남경 근처에서 도살되는 시민과 포로의 총수는 20만명 이상이다. 이 수치는 일본군에 의해 태우는 시체, 양자강으로 던진 시체 및 기타 방식으로 처리한 시체를 포함하지 않다.” 동시에 법정은 일본군이 남경에

서 제멋대로 저지른 강간, 약탈, 불태움 등 범죄행위를 확인했다.

1946년 2월 15일 남경'國防部審判戰犯軍事法庭'이 성립되었다. 남경시 12개 區公所에서 공고를 붙이고, 남경 시민이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대학살을 들추어내는 증거 수집을 호소했다. 中華門 雨花臺 第11區公所에서 谷壽夫 부대의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459건이었다. 법정에서는 남경대학살 때 慈善團體가 조난 동포 시체를 매장한 수치를 얻었고, 중국 적십자 책임자와 당시 매장했던 사람들과 현장까지 가서 증거를 대량 수집해 냈다. 雨花臺 주위에 6채 萬人坑을 발굴했다. 곳곳에서 백골이며,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가 뼈에서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찍은 흉터를 검출해 냈다.

법정에서 남경대학살 동안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中華門, 花神廟-下關 등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당한 군민은 무려 19만여 명이상이고 中華門 부두 등 지역에서 개별학살 당한 군민은 15만명이었다. 총 피해자수는 30여 만명이었다."고 확인하였다. 그 밖에 일본군의 강간, 불태움, 약탈 등 각 종 범죄행위도 인정을 받고 상세한 기록을 취하였다.

심판을 통해 전범 谷壽夫, '살인경기'를 했던 向井敏明과 野田毅 및 남경 시민 300명을 죽였던 田中軍吉 등 4명이死刑을 당하고 우화대에서 총살되었다.

위에서 많은 지면으로 피해자사실을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 시민과 무기를 내려놓은 포로에 대한 학살은 대중국 전쟁 전과정에 관통한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피와 눈물이 주조하여 이루어진 역사는 남경대학살이 일본군 일련의 학살 사건 중의 한 번에 불과한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공연히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는 공포행위를 입증해 주었다.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침략폭행을 말살하려는 것은 모두妄想에 불과하다. 남경대학살이 67년 지나갔지만 일본정부와 군국주의는 여전히 남경대학살을 부인시키고 남경대학살 주범 마쓰이 이와네 등의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정의를 향해 선전하여 평화를 도발하고 있다. 남경시민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지킬 것이다.

(번역 가금영)

南 京 大 屠 杀

— 侵华日军在南京的恐怖罪行 —

王偉民 南京大屠杀紀念館 副館長

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日本军国主义对亚洲、太平洋地区的国家和人民犯下了一系列侵略和暴行，而侵华日军在中国南京，当时中国的首都，一个有着 2460 年历史的古老城市里，置人类道德准则和国际公约于不顾，进行了为期 6 周的烧、杀、淫、掠并施的南京大屠杀，杀害了无辜的平民百姓和放下武器的俘虏 30 万人之多，纵火焚烧，大规模地抢劫破坏，大肆的强奸、轮奸妇女，其惨绝人寰的暴行令整个世界震惊，是日军侵华暴行最集中、最突出、最有代表性的一例。

从 1937 年的 12 月 13 日起，在长达 6 周的时间里，侵华日军对我无辜市民和放下武器的中国士兵进行了惨绝人寰的大屠杀，遇难人数达 30 多万。其中被集体射杀并毁尸灭迹的有 19 万多人，被零散屠杀、尸体经慈善团体掩埋的，有 15 万多具。

侵华日军的杀人手段极其残忍，除了通常的枪杀外，还有砍头、劈脑、刀戳、穿胸、剖腹、断肢、碎尸、活埋、活焚、淹死、冻死、饿死、炸死，同时还有成批地用机枪射杀，再用刺刀补戳，最后弃尸江中，或放火毁尸灭迹的。

与此同时，侵华日军从攻陷南京之日起，大肆的强奸、轮奸妇女。一个月内，市内就发生了两万起左右的强奸事件。有的妇女在遭强奸后又惨遭杀害。日军贪婪成性，大肆抢劫，从工厂、商店、机关、学校的设备、器材、商品、材物，到居民的粮食、牲畜、衣服、器具、金银钱财，以至珍贵的书籍、字画、文物古玩，几乎无物不抢，所到之处，十室九空。抢劫之后，日军又大肆的放火焚烧，他们手执明火，将大小房屋一座接一座的点燃。到处是火光冲天，南京城大约三分之一的建筑物化为灰烬。

违反国际公约的集体屠杀

侵华日军战领南京以后，大肆的搜捕已放下武器的中国士兵和市民，置国际公约于不顾进行了有计划的大规模集体屠杀。

根据大量确凿的史料以及陆续被挖掘发现的我被害同胞丛葬地，当时集体屠杀的场所遍及南京城乡内外，如现在的中山码头、鱼雷营、草鞋峡、燕子叽，挹江门、煤炭港、东郊、汉中门外、北极阁、普德寺、上新河、清凉山以及江东门等地均是当年屠杀、埋尸的现场。

比如：汉中门外大屠杀

1937 年 12 月 15 日，日军将避难于“国际安全区”司法院里的南京市民 1000 多人，维持国家安全区秩序，赤手空拳的中国警察 400 多人（其中 300 多人已脱下制服）以及其他人员共 2000 多人，押解到汉中门外，先用机枪扫射，再用刺刀补戳，然后架上木柴、浇上油焚烧。尸体一直到 1938 年的 2 月才由慈善团体红十字会收敛，掩埋在当时